

2025 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

▣	국	토	교	통	부	소	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	관				
▣	새만금개발청	소	관				

2026.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3
III. 결산개요	4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55
V. 대체토론의 요지	69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72
VII. 심사결과	74
VIII. 소수의견의 요지	74
IX. 결산시정요구사항	74

※ 붙 임 :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2025회 계 연 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6. 8.

국토교통위원장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토교통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기 금
 - 주택도시기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3.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Ⅱ. 심사경과

1. 제출 일자 : 2026. 5. 29.

2. 회부 일자 : 2026. 7. 2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 8. 20.)

상정, 심사, 원안의결

○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8. 21.)

상정, 대체토론, 원안의결

Ⅲ. 결산개요

국토교통부 소관

1. 총괄

가. 총수입·총지출¹⁾ 결산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조 1,296억원(△29.4%)이 감소한 19조 5,1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5,373억원(△7.3%)이 감소하였음.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예산	1,715,181	2,305,694	590,513	1,692,103	1,536,248	△155,855	△769,446
기금	23,566,254	18,742,894	△4,823,360	25,948,821	17,975,084	△7,973,737	△767,810
총수입	25,281,435	21,048,588	△4,232,847	27,640,924	19,511,332	△8,129,592	△1,537,256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6조 571억 1,800만원(△26.5%)이 적은 44조 4,376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1,353억 400만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원(20.0%)이 감소하였음.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예 산	22,401,280	21,098,171	△1,303,109	23,289,590	22,771,031	△518,559	55,703
기 금	32,260,316	30,521,718	△1,738,598	37,205,193	21,666,634	△15,538,559	△11,191,007
총지출	54,661,596	51,619,888	△3,041,708	60,494,783	44,437,665	△16,057,118	△11,135,304

2025년도 총지출 기준 결산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총지출 기준 세출결산 총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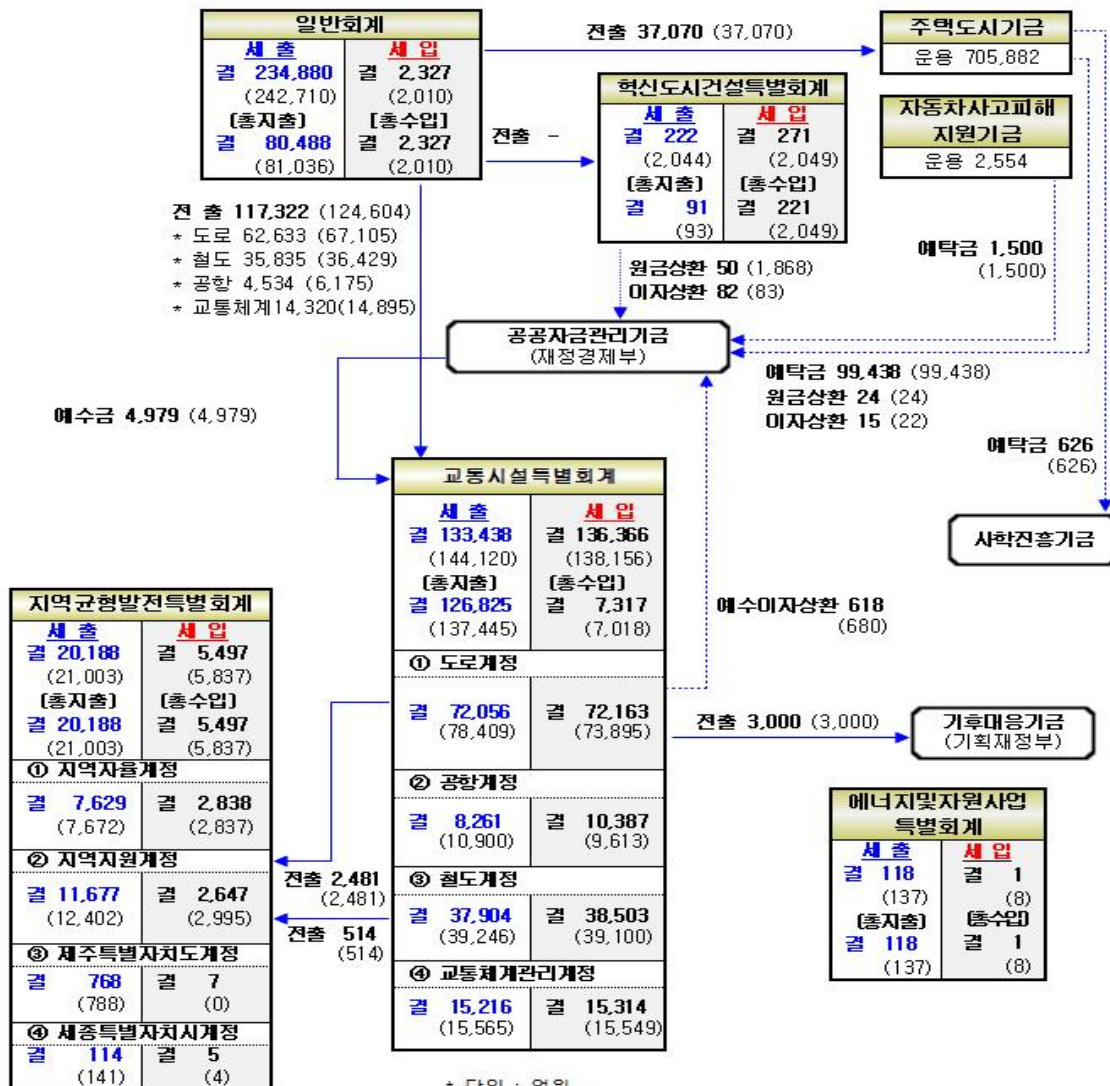
(단위: 억원, %)

회 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	불용
총지출(A+B+C)		604,948	611,771	444,377	72.6	7,919	159,474
세출예산 합계(A)		232,896	239,714	227,711	95.0	7,913	4,089
일반회계		80,547	81,036	80,488	99.3	294	253
특별 회계	소 계	152,349	158,678	147,223	92.8	7,619	3,836
	교통시설특별회계	131,517	137,445	126,825	92.3	7,198	3,4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610	21,003	20,188	96.1	420	395
	혁신도시특별회계	85	93	91	97.8	1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7	137	119	86.9	0	18
주택도시기금(B)		371,496	371,501	216,110	58.2	6	155,38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C)		556	556	556	100.0	0	0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 및 기금의 결산현황 및 회계·기금 간 거래 등 재정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재정흐름도 】

- ◆ 세입세출 결산 : 세입 19조 5,113억원(수납액), 세출 44조 4,377억원(지출액)
주택도시기금 결산 : 조성 및 운용 70조 5,882억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결산 : 조성 및 운용 2,554억원



* 단위 : 억원
* ()는 예산현액(추경, 예비비, 전년 이월액 등 포함)
* 총수입/총지출 :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나.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예산액(총계 기준)은 14조 8,059억원이고, 징수결정한 금액 15조 9,480억원 중 14조 4,461억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임.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총계) 결산 총괄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전년도 수납액	전년대비 증감률
				C/A	C/B		
세 입	148,059	159,480	144,461	97.6	90.6	159,644	△9.5

2025년도 세출예산액(총계 기준)은 39조 7,047억원이고, 전년도이월액 등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0조 4,200억원이며, 이 중 37조 6,127억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1%임.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총계) 결산 총괄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전년도 집행액	전년대비 증감률
				C/A	C/B		
세 출	394,621	410,013	388,846	98.5	94.8	376,127	19.9

1) 세 입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8,059억원, 징수결정액은 15조 9,480억원이며 이 중 14조 4,461억원을 수납하고 1조 4,948억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71억원임.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전체 세입수납액 15조 9,480억원 중에서 14조 6,050억원(98.3%)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조 4,948억원 중 1조 2,750억원(85.3%)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 71억원 중 71억원(100.0%)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음.

【 2025년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억 원)

회 계		예산액	이체 등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 (A-B-C)
합 계		147,760	-	148,059	159,480	144,461	71	14,948
일반회계		2,010	-	2,010	2,636	2,327	-	309
특별회계	소 계	145,750	-	146,050	156,843	142,134	71	14,638
	교통회계	137,856	-	138,156	138,255	136,366	-	1,889
	지특회계	5,837	-	5,837	18,317	5,497	71	12,750
	혁특회계	2,049	-	2,049	271	271	-	-
	에특회계	8	-	8	0.7	0.7	-	-

※ - : 0원, 0 : 소수점 이하금액으로 표에는 표기되지 않음

미수납 사유로는 납기미도래(8,823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2,431억원), 징수·정리유예(121억원), 관계기관 예산부족(298억원), 기타(2,966억원) 등이 있고, 불납결손 사유는 체납자 무재산(25억원), 시효완성(13억원), 추심비용 과다(15억원) 등이 있음.

2) 세 출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39조 4,621억원, 예산현액은 41조 13억원으로 이 중 38조 8,846억원(94.8%)을 집행하고 6,697억원(1.7%)을 이월하였으며 2조 1,376억원(5.3%)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394,621	6,697	156	±71	±5,218	410,013	388,846	7,913	13,254
일반회계	234,212	332	156	±48	±106	242,710	234,880	294	7,536
특 별 회 계	소계	160,409	6,365	0	±23	±5,112	167,303	153,966	7,619
	교특	137,856	5,964	0	0	±4,870	144,120	133,438	7,198
	지특	20,380	393	0	0	±242	21,003	20,188	420
	혁특	2,036	9	0	±23	0	2,044	222	1
	에특	137	0	0	0	0	137	118	0

회계별로 보면 이월액은 일반회계 294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7,19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1조 3,254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3,48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5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2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억원이 발생하였음.

주요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4,263억원), 용지매입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276억원) 등의 사유로 7,913억원(1.9%)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조 1,22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1,802억원), 계획변경·취소(223억원) 등의 사유로 1조 3,254억원(3.2%)이 발생하였으며, 이용은 공공요금·제세 부족액 충당 등으로 71억원, 전용은 배상·보상금 등 충당(509억원), 공공요금·제세 부족액 충당(98억원) 등으로 5,218억원(1.3%)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급여액 증가(156억원)로 인해 156억원 사용하였음

다. 기금 결산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은 총계 기준 101조 2,963억 원으로 당초 계획액 103조 9,975억원 대비 97.4%를 달성하였고, 2024년도 120조 1,505억원 대비 18조 8,542억원이 감소하였음.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별 조성 및 운용 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D-B)
	계획(A)	실적(B)	대비(B/A)	계획(C)	실적(D)	대비(D/C)	
합 계	1,056,657	1,204,180	114.0	1,042,567	1,015,517	97.4	△188,663
주택도시기금	1,054,003	1,201,505	114.0%	1,039,975	1,012,963	97.4%	△188,54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54	2,675	100.8	2,592	2,554	98.5	△12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2017년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조성 및 운용 실적은 2,554억원으로 당초 계획액 2,592억원 대비 98.5%를 달성하였고, 2024년도 2,675억원에 비해서는 122억원이 감소하였음.

라. 부문별 결산

국토교통부 예산은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에 주택, 도로, 철도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8개 부문 중 주택(기금포함) 부문의 집행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도로, 기초생활보장 부문 순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부문은 항공·공항(73.5%), 주택(58.4%)이 있음.

【 2025년도 부문별 세출결산 총괄표(총지출 기준) 】

(단위: 백만원, %)

부문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등*	이용	예비비	이체·초과 지출승인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	불용액
합 계		60,494,783	666,693	521,832	4,813	15,567	40	61,177,117	44,437,665 (72.6)	791,943	15,947,509
주택	예산	252,751	1,406	93	0	0	0	254,156	250,753 (98.7)	856	2,548
	기금	37,149,570	555	0	0	0	0	37,150,124	21,611,011 (58.2)	600	15,538,513
도로		7,283,921	452,049	378,678	0	0	0	7,735,970	7,093,728 (91.7)	546,475	95,768
철도		7,663,206	15,553	80,938	0	0	0	7,678,759	7,514,982 (97.9)	49,951	113,825
항공·공항		874,940	129,039	22,591	162	0	40	1,004,181	738,303 (73.5)	130,437	135,440
물류 등 기타	예산	2,152,258	12,144	14,804	4,651	0	0	2,168,205	2,129,059 (98.2)	13,643	25,503
	기금	55,623	0	0	0	0	0	55,623	55,623 (100.0)	0	0
산업 단지		292,853	34,114	24,084	0	0	0	326,967	282,256 (86.3)	38,391	6,320
지역 및 도시		1,732,838	21,309	644	0	0	0	1,750,218	1,710,627 (97.7)	11,220	28,371
기초생활보장		3,036,823	524	0	0	15,567	0	3,052,914	3,051,323 (99.9)	370	1,221

*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금액

**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100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09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36억원이며, 이 중 2,327억원을 수납하고 309억원을 미수납하였음. 미수납은 납기미도래(0.4억원), 채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202억원), 관계기관 예산부족(67억원), 정리유예 및 징수유예(13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200,971	263,632	232,701	-	30,931	118,131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15,651	41,636	40,432	-	1,203	24,781
◦ 경상이전수입						
- 벌금, 변상금및위약금 보조금정산잔액 등	166,742	216,041	188,702	-	27,339	21,96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지도판매, 교육비, 재산조회수수료 등	11,831	2,295	2,282	-	13	△9,549
◦ 수입대체경비수입						
- 건설품질시험 및 항행안전검사 수수료	4,128	1,358	1,281	-	77	△2,847
◦ 관유물 매각대						
- 토지 및 기계기구 등 매각대	2,619	2,302	4	-	2,298	△2,615

2) 세 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조 2,710억원이고, 이 중 23조 4,880억원(96.8%)을 집행하고 294억원(0.1%)을 이월하였으며 7,536억원(3.1%)은 불용 처리하였음. 이월은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249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은 집행잔액(7,536억원) 등에 의하여 발생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421,254	24,271,003	23,488,017	29,423	753,567
○ 기초생활보장	3,036,823	3,052,914	3,051,323	370	1,221
- 기초주거생활보장 (주거급여)	3,036,823	3,052,914	3,051,323	370	1,221
○ 주택	3,467,064	3,956,358	3,952,968	856	2,536
-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90,790	249,367	245,977	856	2,536
- 내부거래지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금)	3,276,274	3,706,991	3,706,991	-	-
○ 도로	6,790,544	6,710,672	6,263,488	-	447,184
- 도로관리	190	190	186	-	4
- 회계간거래(전출금) (교특 도로계정 전출금)	6,790,354	6,710,482	6,263,302	-	447,180
○ 철도	7,373,964	8,037,149	7,910,467	5,268	121,412
- 철도안전및운영	2,642,247	2,904,745	2,894,942	5,268	4,533
- 회계간거래(전출금) (교특 철도·교통체계계정 전출금)	4,731,717	5,132,404	5,015,525	-	116,879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항공·공항	1,119,568	641,716	475,607	767	165,342
- 항공발전지원	5,202	6,956	5,997	568	391
- 항공운영지원	17,060	17,222	16,233	199	790
- 회계간거래(전출금) (교특 공항계정 전출금)	1,097,306	617,538	453,377	-	164,161
○ 물류등기타	1,178,213	1,200,087	1,176,834	12,369	10,880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205,865	217,042	210,544	4,415	2,084
- 국토교통연구개발	303,515	304,616	303,934	482	200
- 국토교통인재개발	1,324	1,359	1,353	4	2
- 국토교통정보화	104,607	107,183	102,095	2,519	2,568
- 국토교통행정지원	386,429	392,856	385,046	3,743	4,062
- 물류정책	20,785	21,401	20,458	421	521
- 자동차 및 교통정책	133,933	134,149	132,151	714	1,285
- 항공교통본부(책임운영)	21,755	21,481	21,253	71	158
○ 지역및도시	454,848	671,877	657,100	9,791	4,987
- 건축정책	21,559	23,442	21,379	938	1,125
- 국토정보관리	184,016	184,274	183,181	329	764
- 국토지리정보원운영	133,316	149,254	141,308	5,936	2,010
- 도시정책	111,029	309,901	306,680	2,417	805
- 지역개발	4,928	5,006	4,552	171	283
○ 산업단지	230	230	230	-	-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230	230	230	-	-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 입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조 8,15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8,255억 원이며, 이 중 13조 6,366억 원을 수납하고 1,889억 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계 정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13,815,622	13,825,474	13,636,617	-	188,857	△179,005
○ 도 로	7,389,484	7,350,304	7,216,286	-	134,019	△173,198
- 재산수입	96,106	120,379	100,325	-	20,054	4,219
- 경상이전수입	60,530	150,269	38,545	-	111,724	△21,98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194	4,086	1,948	-	2,138	△246
- 관유물매각대	22,225	9,798	9,695	-	103	△12,530
- 전년도이월금	-	304,523	304,523	-	-	△304,523
- 세계잉여금	-	-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208,429	6,761,249	6,761,249	-	-	△447,180
○ 철 도	3,909,958	3,867,649	3,850,263	-	17,386	△59,695
- 재산수입	34,608	76,304	73,665	-	2,639	39,057
- 경상이전수입	36,207	11,269	8,748	-	2,521	△27,45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753	22,855	22,855	-	-	3,102
- 관유물매각대	94,703	131,846	119,619	-	12,226	24,916
- 전년도이월금	-	14,649	14,649	-	-	△14,649
- 세계잉여금	81,798	27,226	27,226	-	-	△54,57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42,889	3,583,502	3,583,502	-	-	△59,387
○ 공 항	961,251	1,050,501	1,038,664	-	11,837	77,413
- 재산수입	195,351	223,847	223,729	-	118	28,378
- 경상이전수입	21,166	28,283	16,684	-	11,599	△4,48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4,311	100,985	100,865	-	120	46,554
- 관유물매각대	512	9	9	-	-	△503
- 전년도이월금	-	128,753	128,753	-	-	△128,753
- 세계잉여금	72,373	115,247	115,247	-	-	42,874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7,538	453,377	453,377	-	-	△164,161
○ 교통체계 관리계정	1,554,929	1,557,020	1,531,405	-	25,615	△23,524
- 재산수입	4,049	2,370	1,985	-	386	△2,064
- 경상이전수입	60,071	38,234	13,004	-	25,230	△47,067
- 전년도이월금	-	1,529	1,529	-	-	△1,529
- 세계잉여금	1,294	82,864	82,864	-	-	81,57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89,515	1,432,023	1,432,023	-	-	△57,492

2) 세 출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4조 4,120억원으로, 이 중 13조 3,438억원(92.6%)을 집행하고, 7,198억원(5.0%)을 이월하였으며, 3,484억원(2.4%)은 불용처리하였음. 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3,795억원), 용지매입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210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은 집행잔액 등(1,722억원), 지급사유 미발생(1,722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음.

【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3,785,641	14,411,984	13,343,769	719,782	348,433
○ 도로계정	7,280,422	7,840,918	7,205,621	544,249	91,036
- 고속도로건설	1,044,467	852,306	837,575	13,864	867
- 국도건설	1,750,049	2,016,483	1,816,344	194,203	5,929
- 도로관리	2,706,294	3,159,130	2,796,652	336,182	26,291
-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171,516	1,183,991	1,132,283	-	51,708
- 지자체도로건설지원	1,892	1,892	1,892	-	-
- 국토교통연구개발	11,004	11,004	11,004	-	-
- 회계간거래(지특 전출금)	233,553	248,103	248,103	-	-
- 회계기금간거래(기후대응기금)	300,000	300,000	300,000	-	-
-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61,647	68,009	61,768	-	6,241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철도계정	3,767,215	3,924,607	3,790,432	44,683	89,491
- 고속철도건설	465,445	765,445	762,945	-	2,500
- 광역철도건설	859,834	768,137	723,454	44,683	-
- 일반철도건설	1,258,553	1,193,496	1,107,333	-	86,163
- 철도안전및운영	1,072,363	1,086,509	1,085,680	-	828
- 국토교통연구개발	59,670	59,670	59,670	-	-
- 회계간거래(지특 전출금)	51,350	51,350	51,350	-	-
○ 공항계정	1,441,019	1,090,004	826,073	129,671	134,256
- 일반공항건설및관리	1,187,766	813,934	566,583	117,423	129,926
- 항공발전지원	143,252	166,069	149,489	12,248	4,330
- 국토교통연구개발	110,001	110,001	110,001	-	-
○ 교통체계관리계정	1,296,985	1,556,458	1,521,636	1,178	33,643
- 도시철도건설	649,874	907,118	887,318	-	19,800
- 국토교통정보화	2,801	3,369	3,120	227	22
- 대중교통육성	644,310	645,971	631,198	951	13,821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83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317억원이며, 이 중 5,497억원을 수납하고, 1조 2,750억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1억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미수납은 납기미도래(8,631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1,146억원), 징수·정리유예(70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583,665	1,831,720	549,658	7,098	1,274,964	△34,007
○ 지역자율계정	283,738	1,363,620	283,803	7,061	1,072,756	65
- 재산수입	2,038	1,399	1,311	-	87	△727
- 경상이전수입	281,700	1,362,220	282,492	7,061	1,072,667	79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2	-	-	2	△2
○ 지역지원계정	299,524	466,935	264,690	37	202,208	△34,834
- 재산수입	3,476	18,017	17,881	-	136	14,405
- 경상이전수입	287,747	439,562	237,925	37	201,600	△49,82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26	26	-	-	25
- 관유물매각대	8,300	9,331	8,859	-	472	55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2	671	671	-	-	629
- 재산수입	2	52	52	-	-	50
- 경상이전수입	40	619	619	-	-	579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61	494	494	-	-	133
- 재산수입	5	38	38	-	-	33
- 경상이전수입	356	456	456	-	-	100

2) 세 출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1,003억원이고, 2조 188원(99.1%)을 집행하고 420억원(2.0%)을 이월하였으며, 395억원(1.9%)은 불용 처리하였음. 이월은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211억원), 용지매입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66억원)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불용은 집행잔액(19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40억원) 등에 의해 발생함.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38,003	2,100,267	2,018,772	42,014	39,481
○ 지역자율계정	767,159	767,159	762,855	-	4,304
- 광역교통정책	74,294	74,294	74,294	-	-
- 도시정책	118,232	118,232	118,232	-	-
- 지역개발	203,957	203,957	201,957	-	2,000
- 지자체도로건설지원	370,676	370,676	368,372	-	2,304
○ 지역지원계정	1,179,677	1,240,162	1,167,672	38,088	34,398
-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4,789	4,789	4,777	-	12
- 지자체도로건설지원	89,115	93,260	82,372	2,226	8,662
- 광역철도건설	53,310	53,310	53,310	-	-
- 광역교통정책	23,599	23,599	23,079	94	426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국토교통연구개발	5,000	5,000	5,000	-	-
- 대중교통육성	14,746	14,746	14,504	-	242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268,419	316,059	276,028	34,464	5,562
- 자동차및교통정책	2,482	2,482	2,482	-	-
- 국토정보관리	21,997	21,997	19,641	50	2,306
- 도시정책	505,783	514,087	498,490	244	15,354
- 지역개발	190,437	190,833	187,989	1,010	1,834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8,535	78,802	76,802	2,000	-
- 국도건설	23,036	23,036	23,036	-	-
- 도로관리	35,008	35,008	35,008	-	-
- 광역교통정책	100	100	100	-	-
국토교통행정지원	4,187	4,187	4,187	-	-
- 도시정책	14,204	14,204	14,204	-	-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2,000	2,267	267	2,000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2,632	14,144	11,442	1,925	777
- 광역교통정책	5,428	5,428	5,428	-	-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7,204	8,716	6,014	1,925	777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25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49억원이고, 27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5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204,902	27,065	27,065	-	-	△177,837
재산수입	203,687	21,815	21,816	-	-	△181,871
기타경상이전수입	1,215	319	319	-	-	△896
전년도이월금	-	903	903	-	-	△903
세계잉여금	-	4,027	4,027	-	-	△4,027

2025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44억원으로 이 중 222억원(10.9%)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억원(0.1%)을 이월하고, 공자기금 예수원금 미상환 및 집행잔액 등으로 1,821억원(89.1%)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5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지역 및 도시	203,573	204,423	22,217	124	182,082
- 지역개발	8,477	9,327	9,056	124	147
-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89,106	186,796	5,000	-	181,796
-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5,990	8,300	8,161	-	139

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억 원이고, 0.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액 (C-A)
합 계	779	78	78	-	-	△701
재산수입	25	37	37	-	-	12
기타경상이전수입	754	41	41	-	-	△713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7억 원으로, 이 중 118억 원(86.6%)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으로 18억 원(13.4%)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투자계정	13,667	13,667	11,837	-	1,830
- 국토교통정보화	3,398	3,398	3,330	-	68
- 물류정책	4,566	4,566	4,549	-	17
- 건축정책	5,703	5,703	3,958	-	1,745

3. 기금 결산

가. 주택도시기금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내역을 보면 청약저축은 계획보다 3조 6,167억원 감소한 15조 1,633억원을 수납하고, 융자금 회수는 계획보다 7조 2,925억원 감소한 13조 3,74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국민주택채권은 계획보다 1조 1,917억원 증가한 15조 1,917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내역(총계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25계획(A)	'25실적(B)	증감(B-A)	달성률(B/A)
청약저축	187,800	151,633	△36,167	80.7
융자금회수	206,675	133,749	△72,926	64.7
국민주택채권	140,000	151,917	11,917	108.5
이자수입	37,956	36,153	△1,803	95.2
복권기금전입금	4,500	4,500	0	100
일반회계전입금	37,070	37,070	0	100
여유자금회수	281,412	358,268	76,856	127.3
기 타*	144,562	139,673	△4,890	96.6
합 계	1,039,975	1,012,963	△27,012	97.4

* 기타 : 정부출자수입,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탁이자수입 등

2) 운용

2025년도 기금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운용규모 101조 2,963억원 중 용자사업비가 13조 9,640억원, 차입금 상환 등이 47조 4,912억원, 여유자금운용이 39조 8,410억원임.

용자사업비 운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에 3조 2,714억원을 집행하고, 전세임대에 4조 4,445억원, 통합공공임대에 1조 4,754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차입금상환 등에서는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출자사업비로 3조 1,157억원,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원리금상환에 31조 8,699억원, 이차보전지원에는 1조 6,953억원, 기금운영비에는 1,59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5계획(A)	'25실적(B)	증감(B-A)	계획대비 실적(B/A)
○ 용자사업비(①)	290,346	139,640	△150,706	48.1
- 국민임대	943	571	△372	60.6
- 공공임대	6,040	6,030	△9	99.8
- 민간임대	15,000	13,467	△1,533	89.8
- 다가구매입임대	33,199	32,714	△484	98.5
- 집주인임대	490	251	△239	51.2
- 분양주택	14,716	13,431	△1,285	91.3
- 미분양안심환매	500	500	-	100
- 주택구입·전세자금	140,816	4,358	△136,457	3.1
- 행복주택	3,140	3,135	△5	99.8
- 전세임대	54,349	44,445	△9,904	81.8
- 통합공공임대	14,817	14,754	△63	99.6
- 도시재생지원	700	700	-	100
- 수요자중심형재생	400	400	-	100
- 소규모주택정비	4,637	4,636	△1	100
- 주택정비사업	400	46	△355	11.4
- 노후산단재생지원	200	200	-	100
○ 차입금상환 등(②)	534,182	474,912	△59,269	88.9
- 출자사업비	33,170	31,157	△2,013	93.9
-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4,000	4,000	-	100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	1,338	1,305	△33	97.5
- 이차보전지원	18,414	16,953	△1,462	92.1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41	1	△40	1.5
- 도시재생사업지원	58	53	△5	91.4
- 기금운영비	2,402	1,591	△811	66.2
- 정부내부지출	101,431	101,154	△277	99.7
- 차입금원리금상환	373,323	318,699	△54,624	85.4
· 국민주택채권	196,567	196,461	△106	99.9
· 청약저축	176,756	122,238	△54,518	69.2
소 계(①+②)	824,522	614,552	△209,970	74.5
○ 여유자금운용*	215,453	398,410	182,957	184.9
합 계	1,039,975	1,012,963	△27,012	97.4

*주택도시기금 운용내역 상 “여유자금운용”은 연중 자금흐름(flow)을 표시한 것으로 연도말 잔액 기준(stock)인 “여유자금 규모”와 차이가 있으며, 기금이 연중 운용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입한 현금의 합계를 의미함.

3)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4조 2,851억원 증액한 14조 3,872억원이며, 연간 여유자금 운용 평균잔액(평잔)은 11조 5,07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조 3,293억원 감소하였음.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품 (수익률)	전담운용기관 (수익률)
2023	19,251,290	20,227,954 (8.26%)	383,601 (0.62%)	2,659,643 (5.74%)	17,184,710 (8.90%)
2024	10,102,159	18,836,429 (3.35%)	516,812 (0.74%)	4,541,714 (3.45%)	13,777,903 (3.69%)
2025	14,387,229*	11,507,128 (5.27%)	495,127 (0.66%)	2,404,652 (3.45%)	8,607,350 (6.08%)

* '25년말 잔액기준 여유자금

2025년도에는 여유자금(평잔)의 95.7%에 해당하는 8조 6,074억원을 전담운용기관에, 2조 4,047억원을 연기금투자품에 각각 위탁 운용하고, 4,951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용하였음. 여유자금(평잔)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전체 평균 수익률은 5.27%로 2024년도 대비 1.92%p 증가하였고, 직접운용 수익률은 0.66%, 위탁운용 수익률은 연기금투자품이 3.45%, 전담운용기관이 6.08%로 각각 나타났음.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 조성

202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2,554억원으로 자체 수입 426억원, 정부내부수입 1,541억원, 여유자금 회수 586억원으로 구성되며, 자체수입의 세부조성내역을 보면, 분담금 141억원, 구상회수금 127억원, 위탁사업비 반납액 62억원, 생활자금대출 회수 63억원, 이자수입 34억원으로 나타났다.

【 202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5계획(A)	'25실적(B)	증감(B-A)	달성률(B/A)
○ 자체수입	474	426	△48	90.0
- 분담금	225	141	△84	62.8
- 위탁사업비 반납	41	62	20	149.1
- 구상회수	106	127	21	119.5
- 생활자금대출 회수	74	63	△11	85.5
- 이자수입	28	34	6	120.4
○ 정부내부수입	1,553	1,541	△12	99.2
○ 여유자금 회수	564	586	21	103.8
합 계	2,592	2,554	△38	98.5

2) 운용

202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은 위탁사업비 553억원, 공자기금 예탁 1,500억원, 여유자금운용 497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업비의 세부지원내역은 의무보험전산망운영 31억원, 피해자 지원 198억원, 정부보장사업 186억원,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10억원, 국립교통 재활병원운영 120억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억원임.

【 202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5계획(A)	'25실적(B)	증감(B-A)	계획대비 실적(B/A)
○ 위탁사업비	553	553	-	100.0
- 의무보험전산망	31	31	-	100.0
· 유지보수비	16	16	-	100.0
· 운영관리비	14	14	-	100.0
- 피해자지원	198	198	-	100.0
· 경제적 지원	159	159	-	100.0
· 정서적 지원	9	9	-	100.0
· 지원사업 홍보	1	1	-	100.0
· 관리운영비	26	26	-	100.0
· 피해예방사업	3	3	-	100.0
- 정부보장사업	186	186	-	100.0
· 무보험·뺑소니보상	150	150	-	100.0
· 미반환가불금보상	20	20	-	100.0
· 관리운영비	16	16	-	100.0
- 생활지원 및 학자금	10	10	-	100.0
· 생활지원 및 학자금	10	10	-	100.0
- 국립교통재활병원	120	120	-	100.0
· 운영교부금	35	35	-	100.0
· 장비유지·보수	75	75	-	100.0
· 재활연구	10	10	-	100.0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	8	-	100.0
· 공제정책 및 감독검사지원	3	3	-	100.0
·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 지원	2	2	-	100.0
· 시스템구축비	3	3	-	100.0
○ 기금운영비	3	3	-	1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500	1,500	-	100.0
○ 여유자금운용	535	497	△38	92.9
합 계	2,592	2,554	△38	98.5

3)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

202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연도말 잔액기준으로 497억원이고, 연간 여유자금 운용 평균잔액(평잔) 기준으로는 585억원임.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유자금 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품 (수익률)	전담운용기관 (수익률)
2023	103,015	101,459 (8.06%)	-	101,459 (8.06%)	-
2024	58,584	106,031 (6.39%)	-	106,031 (6.39%)	-
2025	49,743	58,525 (6.42%)	-	58,525 (6.42%)	-

* 여유자금 규모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총 규모를 의미함.

2025년도에는 여유자금(평잔) 585억원 전액을 연기금투자품에 위탁 운용하였고, 여유자금(평잔)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6.42% 기록하였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무결산 중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전년도 대비 7조 1,486억원(1.0%)이 증가한 731조 5,485억원이고, 부채는 전년도 대비 3조 761억원(1.6%)이 증가한 198조 8,871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순자산은 532조 6,613억원임.

자산은 금융자산 284조 4,274억원, 유·무형자산 443조 7,029억원, 기타자산 3조 4,18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증권 및 정부출자금 증가 등 금융자산이 6조 7,295억원 증가, 사회기반시설 감소에도 일반유형자산이 증가하여 유·무형자산이 1,876억원 증가, 장기선급금 증가 등 기타자산이 2,315억원 증가하였음.

부채는 차입부채 198조 6,131억원, 충당부채 695억원, 기타부채 2,04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보다 기타차입부채 및 차입금 증가 등 차입부채가 3조 280억원 증가,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 충당부채가 41억원 감소, 기타의기타부채 증가 등 기타부채가 522억원이 증가하였음.

【 전년도 대비 재정상태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731,548,471	724,399,873	7,148,598	1.0
Ⅰ. 금융자산	284,427,462	277,697,995	6,729,467	2.4
Ⅱ. 유·무형자산	443,702,929	443,515,327	187,602	0.0
Ⅲ. 기타자산	3,418,080	3,186,552	231,528	7.3
부 채	198,887,150	195,811,006	3,076,144	1.6
Ⅰ. 차입부채	198,613,101	195,585,061	3,028,040	1.5
Ⅱ. 총당부채	69,474	73,580	△4,106	△5.6
Ⅲ. 기타부채	204,574	152,365	52,209	34.3
순 자 산	532,661,322	528,588,868	4,072,454	0.8
Ⅰ. 기본순자산	57,495,833	57,495,833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562,533,817	558,206,111	4,327,706	0.8
Ⅲ. 순자산 조정	△87,368,328	△87,113,076	△255,252	0.3

나. 재정운영(프로그램)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손실 23조 1,259억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30조 9,584억원, 관리운영비 4,678억원 및 비배분비용 1조 7,58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조 2,117억원, 비배분수익 2조 2,625억원 및 비교환수익 5,84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도 대비 재정운영(프로그램)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23,746,688	23,467,363	279,325	1.2
가. 프로그램 총원가	30,958,410	29,677,561	1,280,849	4.3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211,723	6,210,198	1,001,524	16.1
II. 관리운영비	467,755	425,911	41,844	9.8
III. 비배분비용	1,758,722	922,595	836,127	90.6
IV. 비배분수익	2,262,520	3,277,640	△1,015,120	△31.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3,710,645	21,538,229	2,172,416	10.1
VI. 비교환수익 등	584,705	435,273	149,432	34.3
VII. 재정운영결과(순비용, V - VI)	23,125,940	21,102,956	2,022,984	9.6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422억원, 경비 1,25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평가손실 4,902억원과 기타국가운영비용 1조 1,89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6조 1,040억원)과 철도안전 및 운영 프로그램(3조 7,614억원),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3조 514억원)이 있음.

다. 재정운영(성질별)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손실 23조 1,259억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이전비용 16조 6,529억원과 국가운영비용 16조 5,43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국가운영수익 9조 4,742억원 및 이전수익 5,96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도 대비 재정운영(성질별)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수익합계(a)	10,070,761	9,960,101	110,660	1.1
Ⅰ.이전수익	596,519	472,263	124,256	26.3
Ⅱ.국가운영수익	9,474,243	9,487,838	△13,595	△0.1
비용합계(b)	33,196,701	31,063,057	2,133,644	6.9
Ⅲ.이전비용	16,652,941	15,858,129	794,812	5.0
Ⅳ.국가운영비용	16,543,760	15,204,928	1,338,832	8.8
재정운영결과(b-a)	23,125,940	21,102,956	2,022,984	9.6

국가운영비용 16조 5,438억원은 감가상각비 4조 7,738억원, 이자비용 4조 2,970억원, 기타국가운영비용 4조 51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전비용 16조 6,529억원은 국고보조사업비 8조 840억원, 출연사업비 5조 7,71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운영수익 9조 4,742억원은 이자수익 4조 2,213억원, 기타국가운영수익 3조 7,379억원, 자산처분이익 6,25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수익 5,965억원은 기타이전수익 5,823억원과 부담금수익 14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순자산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기초순자산은 528조 5,889억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32조 6,613억원으로 기초 대비 4조 725억원(0.8%)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27조 4,424억원, 재정운영결과 23조 1,259억원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효과 등 때문임.

【 전년도 대비 순자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28,588,868	523,909,821	4,679,047	0.9
II. 재정운영결과	23,125,940	21,102,956	2,022,984	9.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7,442,415	26,988,792	453,623	1.7
IV. 조정항목	△244,021	△1,206,790	962,769	79.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32,661,322	528,588,868	4,072,454	0.8

한편, 2025년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로 8,632억원이 감소하고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이 1조 3,168억원 감소하여 4,5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5,012억원이 증가, 자산재평가손익 5,316억원이 증가 등으로 9,628억원이 증가하였음.

마. 현금흐름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조 4,749억원 유입,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9조 8,478억원 유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조 2,876억원 유입이고 총 현금흐름은 853억원 감소함.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5조 3,338억원은 이자수입 4조 362억원, 국고수입 38조 8,84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6조 8,589억원은 보조금 지급으로 9조 8,799억원, 출연금 지급으로 5조 8,794억원, 국고이전지출 13조 7,66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2조 62억원은 금융상품 및 투자증권처분 35조 9,484억원, 대여금회수 25조 8,91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71조 8,539억원은 금융상품 및 투자증권취득 43조 5,532억원, 대여금지급 24조 1,12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31조 243억원은 국공채발행 15조 1,917억원, 차입금차입 15조 8,31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9조 7,367억원은 국공채상환 18조 6,897억원, 차입금상환 11조 46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년도 대비 현금흐름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74,866	-	8,474,866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847,764	-	△9,847,764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87,575	-	1,287,575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85,322	-	△85,322	-
V. 기초의현금	238,889	-	238,889	-
VI. 기말의현금(IV + V)	153,566	-	153,56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1. 총 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라 함)로 구성되어 있음.

가. 세 입

행복청의 세입예산은 행특회계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2,204억 8,300만원이고, 2,983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35.3%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35.1% 증가하였음.

【 2025년도 행복청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	수납액(B)	예산액 대비 수납률(B/A)	전년도 수납액(C)	전년도 수납액 대비 증감률 [(B-C)/C]
세 입	220,483	220,483	298,363	135.3	220,922	35.1

※ 자료: 행복청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778억 8,000만원을 초과한 2,984억 8,300만원으로, 이 중 2,983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임.

【 2025년도 행복청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C/B)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금액 (C-A)	비율 [(C-A)/A]
행특회계	220,483	298,483	298,363	-	120	99.9	77,880	35.3

※ 자료: 행복청

나. 세 출

행복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행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행복청의 세출예산액(총계 기준)은 4,323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53억 3,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176억 5,500만원으로, 이 중 3,869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7%이며, 집행액은 전년도 대비 48.6% 증가하였음.

【 2025년도 행복청 세출(총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	전년도 집행액(C)	전년도 대비 증감률 {(B-C)/C}
일반회계	211,837	-	211,837	211,837	100.0	124,796	69.7
행특회계	220,483	85,335	305,818	175,096	57.3	135,603	29.1
합 계	432,320	85,335	517,655	386,933	74.7	260,399	48.6

※ 자료: 행복청

행복청의 2025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행특회계 전출금) 2,118억 3,700만원을 전액 행특회계에 전출하였고, 행특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예산액 2,204억 8,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53억 3,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058억 1,800만원 중 1,750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26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4,000만원임.

【 2025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총 계	432,320	85,335	-	-	-	517,655	386,933	126,782	3,940
일반회계	211,837	-	-	-	-	211,837	211,837	-	-
행특회계	220,483	85,335	-	-	-	305,818	175,096	126,782	3,940

※ 자료: 행복청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118억 3,700만원이고 전액 행특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음.

【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회계간전출금(행특회계)	211,837	211,837	211,837	-	-

※ 자료: 행복청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세 입

행특회계의 202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2,984억 8,200만원 중 2,983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이며, 예산액 대비 778억 7,9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초과수납분은 주로 전년도 이월금(853억 1,900만원)에서 발생하였음.

【 2025년 행특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금 액 (C-A)	비 율 [(C-A)/A]
합 계	220,483	298,482	298,362	-	120	77,879	35.3
토지대여료	-	0.6	0.5	-	0.1	0.5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328	42	39	0	3	△289	△88.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0.1	0.1	-	-	0.1	순증
과태료	-	0.8	-	-	0.8	-	-
위약금및변상금	-	251	244	-	7	244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4,094	1,032	923	-	109	△3,171	△77.5
전년도이월금	-	85,319	85,319	-	-	85,319	순증
전년도세계잉여금	4,224	-	-	-	-	△4,224	△100
일반회계전입금	211,837	211,837	211,837	-	-	-	-

※ 자료: 행복청

행특회계의 주요 수납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118억 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53억 1,9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9억 2,3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1.0%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수납내역은 기타재산이자수입 300만원, 위약금 및 변상금 700만원, 과태료 8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억 9,000만원 등이며, 이는 체납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2) 세 출

행특회계는 예산액 2,204억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53억 3,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058억 1,800만원 중 1,750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26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4,000만원임.

주요 사업별 집행액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61억 600만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83억 2,200만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564억 2,800만원, 지방행정시설 건립 119억 6,700만원,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56억 7,200만원 등임.

【 2025년도 행특회계 사업별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	전용 ²⁾	이용				
합계	220,483	85,335	±2,420	-	305,818	175,096	126,782	3,940
정책연구비	197	-	-	-	197	173	14	9
행정효율성증진	353	-	-	-	353	340	-	13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264	-	-	-	264	264	-	0.3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679	-	-	-	1,679	1,648	-	31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10,925	-	-	-	10,925	10,925	-	-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1,263	-	-	-	1,263	1,263	-	-
종합사업관리	2,438	-	±27	-	2,438	2,390	-	48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158	-	-	-	158	127	24	7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4,520	1,139	-	-	5,659	347	5,224	88
광역교통시설건설	8,423	89	-	-	8,512	8,322	46	14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82,057	±1,500	-	117,057	340	116,717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5,821	309	±15	-	6,130	5,672	-	458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427	41	-	-	468	433	21	14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714	-	-	-	714	482	222	10
지방행정시설 건립	12,620	518	-	-	13,138	11,967	-	1,17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9,685	729	-	-	60,414	56,106	2,676	1,632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57,882	435	±683	-	58,317	56,428	1,821	68
기본경비 등 ³⁾	18,114	18	±77	-	18,132	17,869	16	247

※ 자료: 행복청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7억 8,200만원(예산현액의 41.5%)으로,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미지급금 이월 등이고, 주요 사업별 이월액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67억 1,700만원임.

2) 내역변경, 세목변경 포함

3) 기본경비, 인건비, 공무원연금부담금

불용액은 39억 4,000만원(예산현액의 1.3%)으로, 불용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이고, 주요 사업별 불용액은 지방행정시설 건립 11억 7,100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3,200만원 등임.

한편, 2025년도 전용액은 24억 2,000만원(예산현액의 0.79%)으로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 시행 등에 필요한 일반연구비 확보가 주된 전용 사유임.

3. 재무결산

2025년도 말 행복청 소관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2조 396억 9,300만원이고, 부채는 8,9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 396억 400만원임.

자산은 전년 대비 76억 7,600만원(0.4%) 증가⁴⁾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 844억 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금액 (A-B)	비율 [(A-B)/B]
재정 상태	I. 자산	2,039,693	2,032,017	7,676	0.4%
	II. 부채	89	71	18	25.4%
	III. 순자산(I - II)	2,039,604	2,031,946	7,658	0.4%
재정 운영표	I. 프로그램순원가	140,191	147,529	△7,338	△5.0%
	II. 관리운영비	34,764	30,467	4,297	14.1%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589	284	305	107.4%
	V. 재정운영순원가(I +II+III-IV)	174,366	177,712	△3,346	△1.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VI)	174,366	177,71	△3,346	△1.9%
순자산 변동표	I. 기초순자산	2,031,946	2,079,857	△47,911	△2.3%
	II. 재정운영결과	174,366	177,712	△3,346	△1.9%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94,816	155,238	39,578	25.5%
	IV. 조정항목	(12,793)	(25,437)	12,644	49.7%
	V. 기말순자산(I -II+III+IV)	2,039,604	2,031,946	7,658	0.4%

※ 자료: 행복청

4) 전년 대비 자산 증감 내역: ① 유동자산(△1,100만원), ② 일반유형자산(844억 500만원), ③ 사회기반시설(△782억 2,000만원), ④ 무형자산(4억 8,000만원), ⑤ 기타비유동자산(10억 2,2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1,74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600만원(1.9%)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수익)는 1,40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3,800만원(5.0%) 감소하였음.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2조 319억 4,6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1,743억 6,600만원)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1,948억 1,600만원)과 조정항목(△127억 9,300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전년대비 76억 5,800만원(0.4%)이 증가한 2조 396억 400만원임.

새만금개발청 소관

I. 개 요

1. 총 괄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가. 세 입

새만금개발청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1억 9,400만원이고 109억 7,3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19.3%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0.7%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수납액 (B)	예산액 대비 수납률(B/A)	전년도 수납액(C)	전년도 수납액 대비 증감률 [(B-C)/C]
세입합계	9,194	9,194	10,973	119.3	10,894	0.7
일반회계	9,136	9,136	10,924	119.6	10,803	1.1
균특회계	58	58	49	84.7	91	△46.2

※ 자료: 새만금개발청

나. 세 출

새만금개발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만 편성되어 있고,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의 세출예산액은 1,127억 5,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2억 2,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39억 8,700만원으로, 이 중 956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9%이며, 집행액은 전년도 대비 187.1%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전년도 집행액(C)	전년도 대비 증감률 {(B-C)/C}
일반회계	112,759	1,228	113,987	95,638	83.9	33,310	187.1

※ 자료: 새만금개발청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1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5억 2,000만원 중 109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25억 9,7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0.8%이며, 미수납 사유는 기업의 경영악화, 계약해지 등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C-A)
합 계	9,136	13,520	10,924	-	2,597	1,788
토지대여료	1,868	3,958	1,391	-	2,568	△477
기타재산이자수입	-	19	19	-	-	19
과 태 료	-	3	3	-	-	3
가 산 금	-	24	24	-	-	24
기타경상이전수입	760	353	325	-	29	△435
면허료 및 수수료	6,415	9,091	9,091	-	-	2,676
기타잡수입	93	73	73	-	-	△20

※ 자료: 새만금개발청

2) 세 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27억 5,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139억 8,700만원으로, 이 중 95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19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3억 6,700만원임.

주요 사업별 집행액은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9억 4,400만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405억 7,000만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93억 9,600만원 등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2,759	113,987	95,638	11,982	6,367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8,800	8,800	8,800	-	-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1,630	1,656	1,539	23	94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40,165	40,739	40,570	-	169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3,224	3,944	3,944	-	-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490	490	490	-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1,243	1,243	870	372	1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25,539	25,399	9,396	11,512	4,491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600	649	513	-	135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6,542	6,542	6,542	-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253	253	210	-	43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조성	1,244	1,244	1,222	-	22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726	726	580	-	146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1,244	1,244	892	-	352
새만금투자자유치지원	2,702	2,708	2,331	26	351
새만금개발정책연구	312	312	254	50	9
행정정보망 구축(정보화)	1,171	1,171	1,156	-	15
인건비	12,319	12,315	11,971	-	343
기본경비	4,555	4,554	4,357	-	197

※ 자료: 새만금개발청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억 8,200만원(예산현액의 10.5%)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고, 주요 사업별 이월액은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115억 1,200만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3억 7,200만원 등임.

불용액은 63억 6,700만원(예산현액의 5.6%)으로,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고, 주요 사업별 불용액은 새만금투자자유치지원 3억 5,100만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억 6,900만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44억 9,100만원임.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900만원 중 4,9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0%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 (C-A)
합 계	58	49	49	-	-	△9
토지대여료	58	49	49	-	-	△9

※ 자료: 새만금개발청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없음.

3. 재무결산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1조 5,007억 2,800만원이고, 부채는 15억 8,200만원임. 순자산은 1조 4,991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2억 3,600만원(3.3%)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동서도로 국토부 자산이관 등(584억 7,100만원) 및 국고이전지출 감소(110억 670만원) 등에 따른 것임.

【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무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금액(A-B)	비율 [(A-B)/B]
재정 상태표	I. 자 산	1,500,728	1,553,407	△52,679	△3.4
	II. 부 채	1,582	3,025	△1,443	△47.7
	III. 순자산(I - II)	1,499,146	1,550,382	△51,236	△3.3
재정 운영표	I. 프로그램순원가	65,784	61,341	4,443	7.2
	II. 관리운영비	22,945	22,002	943	4.3
	III. 비배분비용	73,795	4,808	68,987	1,434.8
	IV. 비배분수익	24,648	11,320	13,328	117.7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37,877	76,832	61,045	79.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37,877	76,832	61,045	79.5
순자산 변동표	I. 기초순자산	1,550,382	1,599,606	△49,224	△3.1
	II. 재정운영결과	137,877	76,832	61,045	79.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662	27,631	59,031	213.6
	IV. 조정항목	△22	△23	1	4.3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499,146	1,550,382	△51,236	△3.3

※ 자료: 새만금개발청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1,378억 7,7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10억 4,500만원(79.5%) 증가하였으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조 5,503억 8,2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 1,378억 7,7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6억 6,200만원과 조정항목 2,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기초순자산보다 512억 3,600만원(3.3%)이 감소한 1조 4,991억 4,600만원임.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전문위원 : 오세일)

-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총지출 기준 예산현액 61조 1,771억원 중 44조 4,377억원을 집행(72.6%)하고, 7,919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조 9,474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 우선, 예산 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 주거급여지원(일반회계) 사업 중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위탁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위탁 계약 체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주거급여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체결 이후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문화진흥(일반회계) 사업 중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1차로 교부한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도 2차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교부하여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를 통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조금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일반회계)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 개시 이후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에 따른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일반회계)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R&D 정책 개발 및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비의 정산기간 지연 및 정산에 따른 회수금의 반납기한 도과 등 정산 절차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데,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비 정산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일반회계) 사업은 창업 여건이 취약한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보육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취지의 창업지원센터와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향후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업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중 77.4%가 법정처리기한인 20일을 초과하여 처리되었는데, 이의신청 절차가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의신청 처리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이 담당 인력 부족에 있는 경우 인력 충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출연(일반회계) 사업의 지반침하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지반을 탐사하고 공동(空洞)을 복구하도록 하는 사업이나, 공동의 약 28%가 복구되지 않고 있고, 미복구 공동의 상당수가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등급 또는 우선등급에 해당하므로, 미복구 공동의 조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발견되는 공동에 대해서도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절한 복구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일반회계) 사업은 참여기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예방지원 사업이 실시되는 건설현장의 수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위험요소 점검을 지원하는 건설현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정비사업(융자)(주택도시기금) 사업은 조합 등의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신설되었으나 집행률이 11.4%로 매우 저조한바,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융자기간 연장 및 특판상품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일반회계) 사업 중 전시소장품 확보 내역사업은 적합한 판매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최근 4년간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므로, 국토교통부는 긴급구입이나 현지구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시소장품 구매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일반회계) 사업은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해당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자금 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재생(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도시재생사업 내역사업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및 주거환경악화 등의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년 연속 예산현액 대비 40%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등 연례적인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사업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반환금 및 손실금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약 82%가 불용되었는데, 개발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 및 조기 납부자 환급금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액을 불용하거나 정산 시점을 지연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복적인 국고 지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적정 규모의 반환금 및 손실금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주택도시기금) 사업 중 ‘주거복지사 배치’ 내역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영구임대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 2024년에 예산액 전액을 불용한 이후 2025년에도 매칭예산 미확보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조정할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도 주거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매칭 보조금을 사전에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기본경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에서 타 세부사업의 국외출장 경비 부족분을 집행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기본경비와 개별 사업경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반면 대학지원·공동교육 등 고유사업은 축소되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제 운영여건에 맞게 인건비를 산정하고 법인의 고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은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반복 이월이 지적되었음에도 2025회계연도에도 대규모 이월이 지속되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제 사업단계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일반회계) 사업은 사업출연금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시·유물관리·교육 등 사업성 경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일반회계) 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보조금 교부 전 선행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기본경비(일반회계) 사업에서 최근 3년간 국내여비 부족을 사유로 전용 또는 세목조정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구조적 출장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연례적인 국내여비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예산 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 교통안전공단 출연(일반회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사무 수탁 시 사무편람 구비의무에도 불구하고 90여 개의 국가 수탁사무 중 절반가량의 사무를 사무편람 없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항공교통본부 인건비 사업(일반회계)과 관련하여 항공교통본부는 청사 용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부족을 이유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인건비를 자체 이용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국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부 사업에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신공항 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내역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고,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의계약 예비계약자에게 증액된 설계비 지급을 보장해주는 등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지원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국비를 교부하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달리 보조금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감액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지방비 미확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일반회계) 사업은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주차장 연계율이 저조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로 전국 단위의 주차정보 공유 기반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는 교통거점(공항, 철도역 등) 등 일정 범위에서 먼저 주차정보 공유 성과를 현실화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율자동차상용화(일반회계) 사업 중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한 곳에 불과하므로, 농어촌 지자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자 선정 시 농어촌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일반회계) 사업 중 노후출자역사개량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출입구 신설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첨단도로교통체계(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C-ITS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차량 자체의 센서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국내 모든 도로에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C-ITS를 구축하는 'ITS 기본계획 2030'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미 구축이 완료된 C-ITS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택시산업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장기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초과공급 감축 효과가 미흡하고, 획일적인 보상단가와 재정지원 중심의 사업방식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20대와 30대가 K-패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이용이 저조한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홍보 부족이나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K-패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일반회계) 사업 중 노후철도역사개량 사업은 여러 역사를 통합 발주한 공사가 유찰되어 수서·북정 등 11개 역사의 실집행률이 9%에 그쳤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계약이 2026년에 체결된 문제가 있으므로, 공사의 특성과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연도 내 집행을 위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험도로 개선(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2%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위임국도 사업의 집행률은 33%에 불과하므로, 사업 전반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위임국도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철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2%에 그쳤고, 일부 사업은 기존 이월예산이 상당함에도 당해연도 예산을 추가로 교부하여 해당 예산까지 다시 대규모로 이월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상황과 기존 이월액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철도공단에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공항시설관리(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공항시설개선 내역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의 실행률이 저조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므로,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고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부지확보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국비가 조기 교부되면서 실행 부진과 과다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비의 교부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비를 선투입하는 등 집행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생활자금 및 학자금(융자)(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사업은 실행률이 약 52%로 저조하므로 사업의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생활자금 무이자대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거나 대학생 등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 대체토론의 요지

- 청년주거정책, 내 집 마련 지원 및 전월세 안정에 대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청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과정까지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공원 전체가 아닌 훼손되거나 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을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녹지 보전, 토양오염 정화,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시 및 국민과의 숙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검단신도시 등 주택공급 과정에서 과밀학급, 광역교통,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과 교통·교육 문제의 연계 해결 필요
- 통합공공임대 확대 등에 따른 LH의 임대사업 손실 및 총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LH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목표 달성 여부와 전세임대사업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현행 훈령상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 노력 필요
- 뉴홈 및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주택의 고정금리 등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사전청약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제시한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등 청약자에 대한 정책 신뢰 보호 필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경우 정책에 따른 사업자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디딤돌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차보전 부담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한정된 기금재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점검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간 이해충돌 및 HUG 반환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의 처리 지연 및 조사역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전세자금대출의 실거주 인정기준이 위장전입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예외사유를 재검토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도한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폭염으로 작업이 단축·중단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무임금 대기 등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손실 및 국토교통부 보조금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감사 실시 및 조치계획 마련 필요
- 양평고속도로의 예산 불용 문제를 점검하고, 노선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사업 추진 필요
- 석문산단 진입철도,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호남선, 새만금신항 진입철도 등 일부 철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및 GTX 등 주요 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SR의 임금지급·해고무효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하고, 코레일과 SR 간 민사소송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국회와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기존 혁신도시에만 한정하여 이전할 경우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이전방안 검토 필요
- 목포 임성지구 등 LH 참여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조정 등 적극적인 사업 정상화 필요
-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 및 시흥광명지구의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이 지방재정과 향후 해당 지역 SOC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계획 마련 필요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44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함.
-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6건, 주의 31건 및 제도개선 104건 등 총 13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계상하여 예비비를 신청하고 신청목적에 맞게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 유희토지의 처리목표와 수입계획을 세워 특별회계 세입을 확충하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음.
 -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지역별로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기준을 장기간 충족하

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 사업은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를 이·전용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를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음.
-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사업 선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취소된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체계를 즉각 정비하며, 사업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단계별 공정 및 예산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3건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 토지대여료 사업과 관련하여 고액 체납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를 강화하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VII. 심사결과

- 원안의결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IX. 결산시정요구사항

<불 임>

2025회계연도 결산 소위심사 결과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 총 144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토교통부	-	-	6	31	104	(8)	133
국토 분야	-	-	2	13	59	(4)	70
교통 분야	-	-	4	18	45	(4)	6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	-	2	3	-	5
새만금개발청	-	-	1	1	4	-	6
합계	-	-	7	34	111	(8)	144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주거급여지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매입 임대사업, 공공주택 주거복지 브랜드 개발 등 주거급여와 관계없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 예산(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부사업별 비목을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 전용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할 것		
2	위탁계약 이후 재위탁계약 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 계약 체결(2025.6.16.) 이전 2024.12.31.에 (주)유플러스아이티와 재위탁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이후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절차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경우 비주택 거주자 대비 주거상향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실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공공주택으로의 이주 의사가 있는 반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음. - 2025년 주거상향 지원실적 12,391호 중 81.7%인 10,127호가 수도권이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업,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한 인지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60%를 차지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주거상향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고, 해당 사업의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		
4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는 ‘비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는 비판에 대한 분석·점검’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분석하겠다는 답변에 그쳤으며 그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인상의 임대료 전가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준임대료 산정에 반영할 것		
5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현황 재조사를 통한 사업 규모 적정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거급여 지원(10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이사비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예산이 동결되어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현황을 재조사하여 이사비 지원, 주거상향지원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조정실적 제고 및 법정 처리기한 준수 등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분쟁 상담건수 중 증간소음 관련 분쟁이 최다임에도 신청 60건 중 조정성립이 5건에 그쳐 조정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증간소음 사건의 약 88%가 피신청인 연락처·소재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해 각하·취하되었음에도,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간소음 측정이나 피신청인 인적 사항 확보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수단을 마련하여 조정실적을 제고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7	하자심사 분쟁조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역량 확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1034-30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 내,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 180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함.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공동주택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건수’로 매년 4,300건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102~110% 정도 달성하여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양적 목표 달성과 별개로 법정 기한 초과처리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사건접수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지만 사건조사 담당 인력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재정 사건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역량을 강화할 것 ○ 국토교통부는 향후 성과지표에 양적 처리 건수뿐 아니라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을 함께 반영할 것 ○ 국토교통부는 단계별 처리 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연사건에 대한 별도 해소계획을 제출하며, 사건 반려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과도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추경 증액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사업계획 단계에서 실제 지원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채 당초 예산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 예산부족이 발생하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음. - 1차 지원자의 기간연장 지원을 7만 6,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3만명이 감소한 반면, 2차 신규지원 선발인원은 당초 5만 4,000명에서 12만 7,000명으로 크게 증가함. ○ 또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소요를 면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음. - 교부현액 1,489억 5,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232억 8,000만원으로 추경 증액분 571억 7,200만원의 약 45%에 해당하는 257억 4,900만원이 이월,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 시 과도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추가경정예산, 예산조정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지 않고 실제 가용예산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청년에게 실제 지급된 실집행액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		
9	부정수급 환수 관리 및 환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억 925만원이나, 실제 환수액은 7,430만원에 불과해 환수비율이 35.5%에 그치고 있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갈 한정된 예산이 누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미환수된 채권에 대한 법적, 행정적 회수 절차를 즉각 실시하고 집행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함께 강제징수 등 실효적인 환수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미편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문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세부사업의 자치단체이전 목을 연구용역비 목으로 전용한 것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을 제한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1	용역 선금지급 규정 준수 및 관리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청년월세 인원추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2025.12.31. 한국조세연구원과 7,127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의 약 50%인 3,563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선금이 지급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발주 시 「국고금 관리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 지급규정에 맞게 용역 대금 지급업무 관리를 강화할 것		
1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분할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34-32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분할교부하지 않고 4개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초에 일괄 교부하여 보조금이 큰 규모로 반납되는 등 2025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46.1%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교부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명시된 분할교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각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현황과 실수요를 세밀하게 검증하여 일률적인 연초 일시교부 및 대규모 예산 반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이의신청에 관한 법정처리기한 준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1034-32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27.0일로, 총 이의신청 3,214건 중 77.4%인 2,489건이 법정처리기한인 20일을 초과하여 처리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 】 <table><tr><th>구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1.~5.</th></tr><tr><td>이의신청 처리(건)</td><td>737건</td><td>2,215건</td><td>3,214건</td><td>1,034건</td></tr><tr><td>기한 내 처리(건)</td><td>582건</td><td>1,413건</td><td>725건</td><td>103건</td></tr><tr><td>기한초과(건)</td><td>155건</td><td>802건</td><td>2,489건</td><td>931건</td></tr><tr><td>기한초과(율)</td><td>21%</td><td>36.2%</td><td>77.4%</td><td>90%</td></tr><tr><td>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일)</td><td>15.0일</td><td>19.0일</td><td>27.0일</td><td>30.1일</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의신청 건수 등에 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자료 등을 검토하는 국토교통부 내 담당 실무 인력은 거의 변동이 없어, 이러한 인원 수 대비 업무 부담의 증가가 이의신청 처리 지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연도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담당 실무 인력 현황 】 <table><tr><th>구분</th><th>’ 23.7.2.(출범)</th><th>2024.12.31.</th><th>2025.12.31.</th><th>2026.5.31.</th></tr><tr><td>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현원/(정원15)</td><td>17명</td><td>17명</td><td>17명</td><td>18명</td></tr><tr><td>국토교통부 자체 인력</td><td>6</td><td>5</td><td>4</td><td>5</td></tr><tr><td>경찰청 파견</td><td>1</td><td>1</td><td>1</td><td>1</td></tr><tr><td>민간전문가 파견</td><td>5</td><td>5</td><td>5</td><td>5</td></tr><tr><td>지자체 파견</td><td>5</td><td>6</td><td>7</td><td>7</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1.~5.	이의신청 처리(건)	737건	2,215건	3,214건	1,034건	기한 내 처리(건)	582건	1,413건	725건	103건	기한초과(건)	155건	802건	2,489건	931건	기한초과(율)	21%	36.2%	77.4%	90%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일)	15.0일	19.0일	27.0일	30.1일	구분	’ 23.7.2.(출범)	2024.12.31.	2025.12.31.	2026.5.31.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현원/(정원15)	17명	17명	17명	18명	국토교통부 자체 인력	6	5	4	5	경찰청 파견	1	1	1	1	민간전문가 파견	5	5	5	5	지자체 파견	5	6	7	7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1.~5.																																																																		
이의신청 처리(건)	737건	2,215건	3,214건	1,034건																																																																				
기한 내 처리(건)	582건	1,413건	725건	103건																																																																				
기한초과(건)	155건	802건	2,489건	931건																																																																				
기한초과(율)	21%	36.2%	77.4%	90%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일)	15.0일	19.0일	27.0일	30.1일																																																																				
구분	’ 23.7.2.(출범)	2024.12.31.	2025.12.31.	2026.5.31.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현원/(정원15)	17명	17명	17명	18명																																																																				
국토교통부 자체 인력	6	5	4	5																																																																				
경찰청 파견	1	1	1	1																																																																				
민간전문가 파견	5	5	5	5																																																																				
지자체 파견	5	6	7	7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의신청 처리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이 담당 인력 부족에 있는 경우 인력 충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R&D 정산관리 체계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사업(R&D)(4153-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규 R&D 정책개발 및 다부처 공동 R&D 과제 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고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정산 대상인 721개 과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44개(6.1%) 과제가 정산 통보 기준 기한인 9개월을 초과하여 뒤늦게 결과를 통보하였고, 정산에 따라 회수금이 결정된 466개 과제 중 138개(29.6%) 과제가 반납기한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연 반납하는 등 정산 규칙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함. ○ 또한, 연구비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증 기한은 과제 종료 후 9개월까지 적용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산 및 반납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보증 기한이 초과하여 정부 지원금 회수 가능성이 저하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기한(최대 6개월)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자체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규범성이 미흡하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의 관리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내부 규칙으로 관리되던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기한을 산업통상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식 행정규칙(고시)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상의 의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수립할 것 ○ 국토교통부는 이행보증보험의 보증 기한 내에 모든 정산과 회수가 완료되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SOC안전 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SOC안전정보시스템(정보화)(4241-5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SOC안전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지하안전정보체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을 구축하고 통합 운영·관리하는 사업임.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는 소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중 공동(空洞)조사 결과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입력률이 저조하여 안전관리 데이터가 누락됨. 【 안전점검 결과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입력 현황 】 <table><tr><th>구분</th><th>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th><th colspan="2">육안조사</th><th colspan="2">공동(空洞)조사</th></tr><tr><td>2021년</td><td>10,805개소</td><td>2,657건</td><td>(24.6%)</td><td>551건</td><td>(5.1%)</td></tr><tr><td>2022년</td><td>11,038개소</td><td>5,228건</td><td>(47.4%)</td><td>4,427건</td><td>(40.1%)</td></tr><tr><td>2023년</td><td>11,160개소</td><td>6,378건</td><td>(57.1%)</td><td>634건</td><td>(5.7%)</td></tr><tr><td>2024년</td><td>11,211개소</td><td>7,592건</td><td>(67.7%)</td><td>318건</td><td>(2.8%)</td></tr><tr><td>2025년</td><td>11,767개소</td><td>8,539건</td><td>(72.6%)</td><td>514건</td><td>(4.4%)</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시·군·구가 연간 1~10개에 그쳐, 실제 지방자치단체 점검 실적 중 극히 일부만 축적됨. 【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입력 현황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실태점검결과 국토교통부 별도 확인</th><th colspan="2">실태점검결과 입력</th></tr><tr><th>시·군·구</th><th>실시 건수</th><th>시·군·구</th><th>입력 건수</th></tr><tr><td>2021년</td><td>63개</td><td>887건</td><td>1건</td><td>1건</td></tr><tr><td>2022년</td><td>90개</td><td>1,069건</td><td>5건</td><td>72건</td></tr><tr><td>2023년</td><td>168개</td><td>2,969건</td><td>3건</td><td>9건</td></tr><tr><td>2024년</td><td>191개</td><td>4,052건</td><td>6건</td><td>264건</td></tr><tr><td>2025년</td><td>-</td><td>-</td><td>10건</td><td>118건</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공동(空洞)조사		2021년	10,805개소	2,657건	(24.6%)	551건	(5.1%)	2022년	11,038개소	5,228건	(47.4%)	4,427건	(40.1%)	2023년	11,160개소	6,378건	(57.1%)	634건	(5.7%)	2024년	11,211개소	7,592건	(67.7%)	318건	(2.8%)	2025년	11,767개소	8,539건	(72.6%)	514건	(4.4%)	구분	실태점검결과 국토교통부 별도 확인		실태점검결과 입력		시·군·구	실시 건수	시·군·구	입력 건수	2021년	63개	887건	1건	1건	2022년	90개	1,069건	5건	72건	2023년	168개	2,969건	3건	9건	2024년	191개	4,052건	6건	264건	2025년	-	-	10건	118건		
		구분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공동(空洞)조사																																																																										
2021년	10,805개소	2,657건	(24.6%)	551건	(5.1%)																																																																											
2022년	11,038개소	5,228건	(47.4%)	4,427건	(40.1%)																																																																											
2023년	11,160개소	6,378건	(57.1%)	634건	(5.7%)																																																																											
2024년	11,211개소	7,592건	(67.7%)	318건	(2.8%)																																																																											
2025년	11,767개소	8,539건	(72.6%)	514건	(4.4%)																																																																											
구분	실태점검결과 국토교통부 별도 확인		실태점검결과 입력																																																																													
	시·군·구	실시 건수	시·군·구	입력 건수																																																																												
2021년	63개	887건	1건	1건																																																																												
2022년	90개	1,069건	5건	72건																																																																												
2023년	168개	2,969건	3건	9건																																																																												
2024년	191개	4,052건	6건	264건																																																																												
2025년	-	-	10건	118건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완료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구체적인 입력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기에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부동산 전자계약 수요 증가를 반영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263-503)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연계하여 부동산 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 급증함에 따라 본인인증, 전자문서 처리 등 전자계약 체결 시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운영비가 증가하여 3억 3,500만원을 전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위탁기관의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향후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건설기능인 등급제사업 보완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4306-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은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임. ※현장근로일수, 자격, 교육 등을 반영한 종합경력에 따라, 초·중·고·특 등급을 부여 ○ 현재 기능등급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 숙련도와 작업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등급증명서의 활용도가 낮음. ○ 연계교육이 승급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교육 참여로 작업소득이 줄어드는 부담도 있어 교육 참여와 숙련도 향상 효과가 제한적임. ○ 2029년까지 연간 교육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당초 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교육목표 및 예산편성 비교 】 <table><tr><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th><th>2027년</th><th>2028년</th><th>2029년</th></tr><tr><td>교육목표</td><td>2,000명</td><td>2,000명</td><td>2,000명</td><td>2,000명</td><td>4,000명</td><td>6,000명</td><td>8,000명</td><td>10,000명</td></tr><tr><td>예산편성</td><td>2,000명</td><td>2,000명</td><td>600명</td><td>940명</td><td>1,120명</td><td>-</td><td>-</td><td>-</td></tr><tr><td>예산액</td><td>8억원</td><td>6억원</td><td>2억 500만원</td><td>3억 3,700만원</td><td>4억원</td><td>-</td><td>-</td><td>-</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교육목표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4,000명	6,000명	8,000명	10,000명	예산편성	2,000명	2,000명	600명	940명	1,120명	-	-	-	예산액	8억원	6억원	2억 500만원	3억 3,700만원	4억원	-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교육목표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4,000명	6,000명	8,000명	10,000명																																	
예산편성	2,000명	2,000명	600명	940명	1,120명	-	-	-																																	
예산액	8억원	6억원	2억 500만원	3억 3,700만원	4억원	-	-	-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직종별 현장 요구를 반영해 등급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기능등급이 실제 작업능력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국토교통부는 연계교육이 숙련도 향상과 승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고, 교육 참여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교통부는 당초 교육 목표인원과 건설기능인의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건설기능인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수단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4308-301)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사업은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해소를 통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대금 회수를 돕는 신고센터의 운영비(인건비, 운영경비 등)를 보조하는 사업임.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설치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이 2022년 80%에서 2025% 49%로 급락하여,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체납신고액 및 회수액: 2022년 신고액 122억, 회수액 98억 2023년 신고액 160억, 회수액 113억 2024년 신고액 119억, 회수액 76억 2025년 신고액 89억, 회수액 44억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전담인력은 2021년 3인에서 2025년 2인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도 수년간 임금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상태로 감액 또는 동결되었음. ○ 계약서 미작성 관행(일시 임대, 계약서 미요구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체납액 회수율을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 하고, 상습적·악의적 체납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단속, 제재를 강화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가입률·이행률을 점검하여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 경과, 활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 급락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2023·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실적과 연도 별 회수율 개선 목표치를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발생 후 신고·증제에 의존 하는 사후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금지급 단계에서 체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상용임금 예산 편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의 ‘정부 해외인프라 수주활동’ 내역사업은 아랍어 자문관 1인을 공무원근로자로 운용하면서, 보수 지급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이후 연례적으로 고용부담금(320-09)에서 상용임금(110-03)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 아랍어 자문관에 대한 보수는 호봉 승급 및 보수 인상률을 고려하여 연간 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바, 연례적인 전용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상시 운용 중인 아랍어 자문관의 실제 보수 가이드라인과 인상 추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소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연례적 전용 관행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지반탐사 지원으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적정 기한 내 복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으로 발견(2021~2025년)된 공동 중 28%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3년 이후 미복구 공동 중 약 91%가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복구해야 하는 긴급등급 또는 우선등급에 해당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 위험이 매우 큼. 【 2023년도 이후 미복구 공동의 등급 현황 】 (단위: 개소, % / 2026년 2분기 기준)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긴급등급</th><th>우선등급</th><th>일반등급</th><th>미복구 합계</th></tr><tr><td rowspan="2">2023년</td><td>개소 수</td><td>8</td><td>15</td><td>3</td><td>26</td></tr><tr><td>(비율)</td><td>(30.8)</td><td>(57.7)</td><td>(11.5)</td><td>(100.0)</td></tr><tr><td rowspan="2">2024년</td><td>개소 수</td><td>17</td><td>25</td><td>3</td><td>45</td></tr><tr><td>(비율)</td><td>(37.8)</td><td>(55.6)</td><td>(6.7)</td><td>(100.0)</td></tr><tr><td rowspan="2">2025년</td><td>개소 수</td><td>98</td><td>67</td><td>18</td><td>183</td></tr><tr><td>(비율)</td><td>(53.6)</td><td>(36.6)</td><td>(9.8)</td><td>(100.0)</td></tr><tr><td rowspan="2">미복구</td><td>개소 수</td><td>123</td><td>107</td><td>24</td><td>254</td></tr><tr><td>(비율)</td><td>(48.4)</td><td>(42.1)</td><td>(9.4)</td><td>(100.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미복구 합계	2023년	개소 수	8	15	3	26	(비율)	(30.8)	(57.7)	(11.5)	(100.0)	2024년	개소 수	17	25	3	45	(비율)	(37.8)	(55.6)	(6.7)	(100.0)	2025년	개소 수	98	67	18	183	(비율)	(53.6)	(36.6)	(9.8)	(100.0)	미복구	개소 수	123	107	24	254	(비율)	(48.4)	(42.1)	(9.4)	(100.0)
		구분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미복구 합계																																														
2023년	개소 수	8	15	3	26																																																		
	(비율)	(30.8)	(57.7)	(11.5)	(100.0)																																																		
2024년	개소 수	17	25	3	45																																																		
	(비율)	(37.8)	(55.6)	(6.7)	(100.0)																																																		
2025년	개소 수	98	67	18	183																																																		
	(비율)	(53.6)	(36.6)	(9.8)	(100.0)																																																		
미복구	개소 수	123	107	24	254																																																		
	(비율)	(48.4)	(42.1)	(9.4)	(100.0)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방치되고 있는 공동에 대해 조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지반탐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도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공동등급별 복구기간 내에 적절한 복구조치가 완료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직접 독려·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사업 참여기관 확대 및 사업목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4330-30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사고조사 및 예방점검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임. ○ 2025년도 ‘사고예방지원’ 및 ‘안전교육 등’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음. - 참여기관 확보 수단인 ‘건설기계사고 예방 관련 업무협약’은 체결기관이 2025년 3개(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2026년 2개(6월말 기준, 국가철도공단, 한국중부발전)에 불과함. - 개별 전화 연락을 통한 참여 기관 선정방식은 그 대상이 일부 기관에 한정될 수 있음. ○ ‘건설현장 사고예방지원’은 11월에 사업목표를 ‘건설현장 239개소’에서 ‘건설기계 350대’로 변경하였는데, 건설현장의 환경적 요인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다수의 작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예방지원 대상 건설현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6월~12월) 사업 실적: 180개소 현장, 477대 건설기계 점검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사고 예방 관련 업무협약’ 체결기관을 확대하고 개별 전화연락에 의존하는 참여기관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모집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점검 대수’ 외에 ‘사고예방지원 건설현장 수’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지원 현장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지원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5632-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ODA)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정책이 미흡하거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적용한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전액 국제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 6월말 기준 유엔 해비타트의 누적 실집행액은 19.43억원에 그치고 있고 전체 5년 사업기간 중 남은 17개월 동안 남은 총사업비 40억원의 51.5%에 해당하는 20.6억원의 집행이 필요하여 향후 집행률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잔여 사업 기간 동안 남은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와 정례 실무 협의를 강화하고 미집행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보완 및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5632-320)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성은 있으나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동산개발사업에 공공이 선투자해 민간대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000억원을 전액 출자했으나 실제 사업장에 집행된 금액은 없음. ○ 지원대상과 투자조건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만 먼저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출 회수와 재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재원이 장기간 묶일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성은 우수하나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 국토교통부는 투자 사업장의 본 PF 전환과 투자금 회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상환기간 초과 시 유예기간·연체이자·회수절차를 구체화하며, 투자·회수·재투자 일정을 단계별로 관리할 것 ○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수도권에만 자금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 성장거점 우대 등 실효성 있는 보조 장치를 철저히 가동하여 균형 있게 재투자가 순환되도록 관리할 것 ○ 국토교통부는 개발앵커리츠와 같이 사업추진 및 실제 투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자금집행계획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규모만 단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재원을 추경을 통해 일시에 출자하여 불필요한 국채 이자 등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실집행률 관리 강화 및 데이터 허브 실적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5637-304)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2025년 결산상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101%, 예산현액 대비 99.8%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집행액은 2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1.9%에 불과함. ○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후 미집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실집행률 : 2022년 79.6% → 2023년 56.5% → 2024년 68.3% → 2025년 41.9% ○ 2022~2023년 8개 광역지자체에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였으나, 구축 이후의 성과가 결산자료상 확인 불가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교부액이 아닌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관리·공표하고, 실집행률을 사업 성과지표에 반영하며, 실집행률 하락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 연계·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신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리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조성’ 사업은 거점형·강소형으로 구분하여 3년간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의 경우 예산 550억원 중 52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은 391억 2,600만원에 그침. ○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조성실적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도 실제 사업추진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할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2025.12. 실태조사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1억 9,530만원을 적발하여 1억 6,170만원을 회수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비해 적발실적 및 회수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협약상 목표달성도를 반영한 교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사업 완료 및 조성·지원 종료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 실제 조성 진척률, 서비스 가동·이용률, 사업기간 준수 여부, 운영재원 확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이미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신속히 환수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집행실태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민간기업에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법적근거 명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인증 보유 여부를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2026년 공모지침에서는 신청요건 유의사항으로 참여 민간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보유 의무가 추가되었음. ○ 법률 개정 없이 공모지침만으로 인증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수행을 배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보유 강화 방침과 관련하여, 인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7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역사업은 세종과 부산에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2018년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주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선도지구 착공은 2026년 하반기로, 입주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가시적인 사업성과 창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세종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가 계획 시기에 맞게 착공과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와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도시 조성 단계에 맞춰 관련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계획 대비 성과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결산자료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AI·데이터허브 구축 지원사업’ 세부사업 예산 17억 3,900만원을 ‘스마트 IoT 구축’ 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한 사유가 전담기관 요청 및 사업일정 조정으로만 제시되어,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국가시범도시의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 내역변경 경위와 당초 계획 대비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 축소와 AI 데이터 관련 국정과제 간 정합성을 반영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		
29	국회 시정요구 미개선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세부사업에 대하여 4회에 걸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 스마트시티 조성 : 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스마트 솔루션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22년 예정처)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사업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22년 예정위) - 스마트시티 국외확산지원 : 집행률 제고 및 이월 최소화 필요(23년 상임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 재발 방지 필요(23년 상임위, 예정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4회에 걸친 국회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실집행률을 사업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허위광고· 표시에 관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동산거래조사(57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판단을 저해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매년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허위광고를 적발하고 삭제하는 것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발생 유인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움. ○ 한편,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신설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고의적 위반행위와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중개플랫폼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허위광고가 게시되는 단계에서 차단할 것 ○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매물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경감하고, 허위 표시·광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적발부터 조치까지의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및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 제도개편을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 원인 규명 및 조치 지연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동산거래조사(57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실거래기반 모니터링의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기본 모니터링 신고 건수는 2021년 9,002건에서 2023년 21,686건을 거쳐 2025년 17,073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 거래 유형의 신고가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4,527건에서 2025년 2,257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실제 위반 감소에 따른 것인지 처분 절차 지연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고, 2026년 3월말 기준 2024년 매매유형 조치요구건수 중 약 150건, 전월세유형의 조치요구건수 중 약 230건이 아직 미처리 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 원인 및 조치 지연 사유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미처리 상태로 남은 조치요구 건의 처리를 신속화할 것		
32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5734-30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2024년 65%, 2025년 51%로 2년 연속 목표를 크게 미달성함. ○ 평가대상 레이어와 기관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성과목표는 지속적으로 상향 설정되고 있으며, 예산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어 실적 추세와 무관한 목표 설정으로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수준평가 실적 저조 및 평가대상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실적 추세와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재설정하는 한편, 품질개선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지적재조사 사업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적재조사사업(5735-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17억원, 사업량 542만 필지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2025년까지 누적 실적량은 사업량 기준 38.9%(210만 필지), 예산집행 기준 33%(4,291억원)에 그쳐 2030년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서울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한 조정금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다수 이해관계자 문제 등으로 사업지구 지정률(2.7%)과 완료율(1.9%)이 전국 평균(지정률 38.7%, 완료율 31.7%)보다 현저히 낮음 ○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거래가 제한되고, 민사·행정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지적재조사 수수료에 50% 감면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공-민간과의 협업과 민간참여 확대에 책임수행기관의 운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사업지구에 대한 실증 분석 실시, 대도시 특화 사업추진 방식의 도입, 조정금 사전 확인 가능 제도의 도입, 연도별 배정예산 증액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완료 시기를 준수하고, 사업지구별 지연 원인을 분석해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이후 발생하는 경계 결정과 조정금 관련 이의신청·소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지역에 대한 조정과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에 대한 대가인 지적재조사 수수료에 매년 실제 투입 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 마련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적재조사사업(5735-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40,4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08백만원 감액 편성되어 2030년 완료 목표와 예산 편성 방향이 상충되며, 2025년에는 예결위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사업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함. ○ 감사원은 2025년 기관정기감사에서 동 사업 관련 4개 사항을 지적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개별불부합 물량 및 사업비 재산출·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집행 가능한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방식의 전면 변경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성과 연계 활동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30년도 사업완료를 전제로 한 연도별 정비물량·소요예산 계획을 재산정하여 산출하고, 목표달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하며, 감사원 2025년도 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 및 이행 일정을 제출할 것 ○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 감액이 사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한국국토토지공사의 경계복원측량 등 기존 수치측량 성과를 지적재조사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국토지형관리 사업의 반복 단독응찰 및 수의계약 편중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지형관리(5831-301 · 302 · 303 · 305 · 5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지형관리 단위사업은 국가기본도 제작, 국가기준점 관리, 국토조사 및 지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393억 5,400만원 중 1,31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 전체 용역계약 157건 중 수의계약은 65건으로 41.4%를 차지하고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용역계약의 33.0%에 달하며, 65건 모두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일부 운영·유지관리 및 연구용역은 동일·유사 업체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도 단년도 계약방식으로 반복 발주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반복적인 단독응찰 원인을 점검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단위·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장기계속계약 도입과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근거 정비를 검토할 것		
36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의 반복 이월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기본도 제작(5831-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은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6회계연도 연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다한 이월에 대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25년에는 성과지표인 “국토지리정보원 제공자료 이용횟수”는 목표 15,681건 대비 15,115건으로 96.4%에 그쳐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기후변화대응 산단 조성지원 사업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후변화대응산단 조성지원(6031-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023년 5억원, 2024년 29억원, 2025년 2억 3,000만원, 2026년 9억 7,500만원으로 크게 변동하는 등 연차별 소요 추계가 부실한 상황임. ○ 피보조기관은 이월 사유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변경 전후 내용과 사업별 공정률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또한 2024년 이후 성과지표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고 2025년 실적도 공백이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및 추가 지정 산단 6곳 중 2025년 실질적인 지원은 대구울하 1곳에 국한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별 공정률과 국비 소요를 재점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현실화하고 예산 급변동 사유를 국회에 설명하는 한편, 교부 시기·규모를 실제 공정에 연동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및 스마트그린산단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연구용역 계약 및 성과관리 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정책종합연구(61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이월’로 동일하며,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87%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개선책 마련 중’이라는 입장임.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가 2022년 이후 폐지되어 성과관리가 공백인 상황임. - 기존 성과지표는 ‘제도개선 활용률’이었음. ○ 정책연구가 지속 증가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6%가 감액된 2억 1,600만원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발주시기를 연초로 앞당기고 과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반복되는 이월을 해소하고,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 내역을 제출함과 함께 경쟁입찰 비율 제고를 위한 이행계획과 목표치를 국회에 보고할 것 ○ 국토교통부는 폐지된 성과지표를 대체할 ‘정책연구 활용도 지표’를 신설하여 성과관리 공백을 해소할 것 ○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연구계획에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		
39	보조금 실집행 관리 및 일률적 교부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문화진흥(6131-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예산 6억원 중 실집행액이 2억 7,800만원(실집행률 46.3%)에 불과하며, 그 중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교부액 전액을 미집행하였고, 경기도 양주시는 23.1%만 집행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집행 준비가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교부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확정 및 집행 준비도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전액 미집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제한, 환수 등 실효적인 조치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해외연수 성과 추적관리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문화진흥(6131-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건축설계인재양성’ 사업은 해외연수 6억 6,000만원에 대한 수료자 활동 및 취업 성과가 제시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인재양성’ 내역사업의 해외연수 사업 수료자의 활동, 취업 성과를 추적·관리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41	성과지표 목표수치 재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문화진흥(6131-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성과지표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건수’의 달성도가 2024년 198.5%, 2025년 231.3%로 2년 연속 목표치를 실적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기능을 상실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성과지표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건수’의 목표수치를 재설정하여 성과지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2	지속적인 불용문제 개선 및 전시소장품 수집경로 다각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시건축박물관운영(6131-31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시소장품확보’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과 실제 수집·낙찰 실적이 차이를 보여 최근 4년간 지속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1억 1,600만원, 8억 8,500만원, 8억 800만원, 5억 7,1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023~2024년 2년 연속 미흡을 받아 경매업체 및 경매참여 확대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불용 규모는 개선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시소장품확보 예산의 점당 단가 및 수집물량 산출 근거를 실제 구매·낙찰 실적에 기반하여 재산정하고, 지속적인 불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수집경로 다각화 실적을 계량적으로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개관을 위한 계획수립 및 향후 운영소요 추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시건축박물관운영(6131-31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7년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나 전시물 제작, 설치 공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공사 공정 간 연계관리계획, 개관 후 운영조직(직제·정원) 및 운영비 추계가 확인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7년 개관을 위한 전시·건축 공정 통합관리계획과 개관 후 운영을 위한 조직·예산 소요를 조속히 확정할 것		
44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추경 증액예산 불용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2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4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추경 증액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불용한 것은 사업 수요와 연내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방식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0년 이후 국회 예·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집행부진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반복적인 집행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사업수요와 집행여건을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5	화재안전성능 미보강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행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은 총 1,949동 중 1,770동만 완료되어 179동이 미보강 상태로 사업기한이 종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사업기한 종료 이후 구체적인 보강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축안전(6132-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41곳의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정비가 완료된 지구는 13곳(31.7%)에 불과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사중단위험 건축물의 철거,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초·중기기업 투자비중 점진적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교통 혁신펀드(7036-30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조성하는 것임. ○ 펀드 조성과 투자 지연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반형 자펀드는 구체적인 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화형도 공간정보 및 그린 리모델링 분야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업력별로는 창업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아 민간자본 접근이 어려운 창업 초기·중기 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펀드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일반형·특화형 자펀드 모두 기술 분야별 투자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입된 창업 초기기업 최소 투자의무를 점검하고, 창업 초기·중기 기업 투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유사성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7036-30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업은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운영(2025년 예산 5억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두 창업지원센터는 입주 대상을 ‘업력 7년 이내의 예비·초기 창업자’로 한정하고, 무상 사무공간과 창업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목적과 취지가 사실상 같고, 실제 동일한 건물의 동일한 층에 설립됨.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238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성남시 인근에도 다수 밀집해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단독 공간 지원 목적의 센터를 별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원점 검토가 필요함. ○ 2025년 실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투입이 주로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기초적인 사무공간 제공에 편중되어 집행된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상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와 예산을 통합 운영하거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연례적 예산전용 및 세목변경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040-300)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3년 총 21회, 2024년 총 26회, 2025년 총 16회의 전용 및 세목변경(조정)이 이루어졌고, 이 중 상당수가 연말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청년소통채널 행사 대행용역의 경우 3년 연속 연초(1~2월)에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변경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두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예산 3억 4,760만원 중 전용, 세목변경 및 불용을 제외하고 실제 비목에 맞게 집행된 금액은 2억 590만원으로 약 59.2%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매년 반복되어 예견 가능한 행사용역비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3년 연속 연초에 세목을 임의 변경하여 법적 구속력을 교묘히 피해 간 기획 및 집행 담당 실무진과 결재 라인에 대해 소홀한 예산 관리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것 ○ 국토교통부는 연례적 전용 및 세목변경으로 집행하는 것을 개선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용역이나 임차료 등의 소요는 예산 편성 시 적정 비목에 반영할 것		
50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의 실집행을 제고 및 보조금 교부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555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사업은 동·서·남해안과 내륙권의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77억 1,200만원은 국토교통부 단계에서 전액 집행되었으나, 14개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30% 미만이고 이 가운데 10개 사업은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등 보조사업자 단계의 집행실적이 저조함. ○ 국토교통부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도 12월에 잔여 국비를 전액 교부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공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보조금만 교부하고,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잔여 국비 교부를 유보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며,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반복적인 실집행을 저조 및 사업기간 연장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점검 및 관리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재생사업(564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시재생사업 내역사업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쇠퇴에 대응하 여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2년 연속 예산현액 대비 40%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등 연례적인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집행실적을 국고보조금 교부액과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반복적인 실집행을 저조·사업기간 연장 사업을 전수점검 하며, 집행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규모 조정 등 관리기 준을 마련하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52	유휴 물납토지 매각 및 임대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5737-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개발부담금으로 물납된 토지의 매각, 임대와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잔여 물납토지 가운데 실제 매각된 규모가 미미하고 상당수 토지가 임대되지 않은 채 유휴 상태로 남아있음. ○ 매각·임대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과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토지별 입지·수요·권리관계를 분석해 매각 가능 토지는 신속히 처분 하고,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임대·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 ○ 국토교통부는 장기 유휴토지의 처리목표와 수입계획을 세워 특별회계 세입을 확충하 고 관리비용을 줄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세종복합산단 진입도로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및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6040-540)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사업에는 2025년 본예산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 설계 용역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 대부분이 다른 세종지역 산단 진입도로 사업으로 전용되고, 최종 예산현액 2,000만원 중 800만원만 집행되었음. ○ 실시설계 지연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향후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진입도로 적기 개통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세종복합산단의 조성과 기업 입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등 선행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진입도로가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54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613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53억원 중 17억 3,2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32.7%로, 2024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분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온 만큼 소요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추계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음. ○ 성과지표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예산집행률’은 사업의 정책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단순 집행 진도만 보여주는 지표로 성과관리 지표로서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수요예측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성과지표를 에너지 성능개선 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 내역 국회 제출의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 7차례 자체변경 중 3차례 자체변경 내역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례의 변경안도 정부 이송 이후 확정된 변경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변경내역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56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이차보전 지원(1042-40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231-401)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6월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대출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의 경우 예산액 14조 815억원 중 4,357억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약 3%에 불과함. -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직접융자와 달리 기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매년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며, 은행이 위험 없이 정부가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수익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8.13대책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에 포함하거나 총량 증가율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 시 특정 방식으로 과도하게 편중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국회 심의 취지를 고려해 직접융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가 높은 직접대출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이차보전사업 확대 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 지방미분양안심환매(융자)(1139-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3,000호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456호를 매입하는데 그쳐 당초 매입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매입 단가인 ‘분양가의 50%’가 지나치게 낮았으며, 이후 2025.12월에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60%’로 인상하였으나 이미 선정된 사업장에 소급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 구조상 매입신청 유인이 낮아 대규모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저조한 사업 실적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 수요 회복과 준공 후 미분양 관리까지 포함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8	우선 입주대상자 모집 확대 등 충실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집주인임대주택사업(1333-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의 예산액은 490억원으로 78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429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51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025년 예산액 대비 51.2%에 불과하였음. ○ 최근 5년간 전체 입주자 계약 건수 중 40% 미만의 물량만이 1순위 임차인에게 공급되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사업의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보임. - 전체 입주자 계약 건수 중 1순위 임차인이 입주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공급분 중 17.9%, 2022년 공급분 중 35.6%, 2023년 공급분 중 20.1%, 2024년 공급분 중 36.0%, 2025년 공급분 중 25.6%임. ○ 비록 2026년부터 위 사업이 폐지되어 집주인임대주택사업 공모 및 신규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위 사업을 신청하여 융자를 받은 임대인들의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적용받으면서 8년의 대출기간 및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임대를 이어갈 수 있으므로 충실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현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되도록 1순위 임차인이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사업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산불지역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 출자(1440-4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이재민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매입 임대주택 공급 예산 1,52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이재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당시 행정안전부의 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세대는 조사대상 이재민의 3.8%에 불과하였으며, 기존마을 인근에 위치한 임시조립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93.7%로 대다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과 현장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0	다가구매입임 대 공급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 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 등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축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전체 주택공급량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신축 약정매입 확대가 필요하며, 2025년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19만 3,940호 중 6,186호가 장기 미임대 상태이고 그 중 2,830호는 1년 이상 공실인 등 입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매입 문제가 있음. ○ 또한, 하자수선비도 2021년 987억원에서 2025년 1,76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대하자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매입임대주택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약정매입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입지와 실제 임대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단계별로 하자를 관리·점검함과 함께 건설사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매입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절충형 매입모델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 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매입가 산정방식에 있어 공사비연동형 방식이 2026.3.18. 폐지되고 감정평가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매입물량이 감소하여 2026.6월 기준 수도권 매입실적은 4,883호에 그치고 있음. - 감정평가형은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는 적정가격 산정이 가능하나, 입지가 불리한 지역은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사업자가 적정 공사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형 단독 운영으로는 입지 편차에 따른 사업참여 유인 저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14만호 목표 달성이 어려운 만큼, 입지 여건에 따른 사업참여 유인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형 매입모델을 마련할 것		
62	공실 주택 우선매입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 출자(1440-4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기축 매입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도 매입이 가능한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전체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퇴거 세입자가 새 거처를 구하게 되어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입 시 공실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원칙을 강화할 것		
63	출자금 환원 방식의 예산편성 · 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1440-4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승인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출자금을 이월, 불용하지 않고 차년도 신규 출자금에서 상계하는 환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원 규모가 2024년 9,609억원에서 2025년 2조 4,069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72조의 이월 제한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측면이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자금 환원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보증금 미회수 방지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보증금 - 전세임대(용자)(1337-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전세임대 사업에서 임대인의 무자격·기망행위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리분석·보증보험 관리 등을 이유로 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고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은 2021년 798건·381억원에서 2023년 1,727건·1,000억원으로, 2025년에도 2,281건·1,461건으로 크게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권리분석·대항력 확보·보증보험 관리 등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도록 관리하며, 기존 미회수 보증금의 회수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5	전세임대 입주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보증금 - 전세임대(용자)(1337-4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연례적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입주대상자 선정 대비 실제 전입 비율은 각각 51.0%, 52.5%, 64.7%, 52.5%, 49.9%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의 실제 전입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격, 입주실적 등을 고려한 지원한도 및 입주지원 방식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35개 지구 중 21개 사업이 목표 순현재가치에 미달하고 초과손실이 약 4,600억원에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2025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이 230.8%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 사업별 손실과 회수 전망을 관리하여 초과손실을 최소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공급 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67	중형면적 공급 확대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중형면적 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착공·공급 전반적으로 속도가 저조하며 성과지표도 공급물량 중심이어서 실제 수요충족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상자의 주거수요를 반영하여 중형면적 통합공공임대의 사업승인·착공을 확대하고,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주택면적 등 질적지표를 강화할 것		
68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전 예산 교부 부적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1440-403)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5.10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 일반출자금 493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동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증액하였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반영되어 변경 절차가 완료(2025.10.12.)되기 전에 동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교부(2025.10.10.)한 문제가 있음. - 2025.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장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 기금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상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고금 관리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된 이후 예산을 교부하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기금예산을 사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9	사업성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도시기금 - 주택정비사업(용자)(1520-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주택정비사업(용자) 사업의 예산액은 400억원이었으나, 용자를 신청한 조합이 4개 사업장에 불과하여 4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354억 5,000만원을 불용였는바,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11.4%에 불과하고 불용률은 88.6%에 이름. - 위 사업은 2025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인지도가 낮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용자조건이 불리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용자기간 연장 및 특판상품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나.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의무제출 이행관리 강화 및 모바일DTG 보급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내역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를 통한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운행기록점검센터를 전국에 운영하는 사업임. ○ 대형 화물자동차는 2024년 10월부터 운행기록 의무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운행기록 제출률이 저조함. - 2025년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제출률은 65.3%에 그쳐 34.7%에 해당하는 약 1만 8,000여 대가 운행기록 제출의무를 미준수 ※ 노선버스(의무제출)의 운행기록 제출률은 100%임. - 의무화 시행 이후 2026년 6월까지 위반 화물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국 137건, 개선 명령은 전국 198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 등이 불충분 ○ 운행기록이 자동제출되는 방식의 모바일DTG는 운행기록 추출·업로드 과정이 수반되는 수동형DTG에 비하여 편리하여 운행기록 제출률 제고에 효과적이나, 대형 화물자동차의 모바일DTG 보급률은 타업종 차량에 비하여 낮음. - 업종별 모바일DTG 보급률 : 대형화물 38.3%, 전세버스 95.2%, 택시 77.3%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제출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모바일 DTG 보급을 확대하여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제출률과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스마트주차정보시 스템 연계율 제고 및 주차공유 성과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4638-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전국 주차장의 시설정보, 운영정보 및 실시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시간대별 주차정보 공유 부족에 따른 배회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에너지 낭비 및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차난 해결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의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연계율 통한 주차장 연계율이 8.4%로 저조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에 대한 지자체 우려로 전국 단위의 주차공유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서울시 시스템에서 수집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주차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지자체가 민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시정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주차정보와 실제 주차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민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의 주차장 연계율을 확대해 나가되 주차공유 필요성이 높은 지역 또는 교통거점(공항, 철도역 등) 등 일정 범위에서 먼저 주차공유 성과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가교통통계의 적시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통조사(4639-517)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가교통조사 사업은 교통 SOC의 수요 예측과 각종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핵심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수단별 여객·화물 기종점통행량, 교통수단별 이용 현황, 교통수단·시설별 공급·운영 실태 등을 포함한 국가교통조사를 수행하여 교통DB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 2026년 현재 일부 주요 국가교통통계는 2023년 자료가 최신 자료로 제공되는 등 통계의 적시성이 낮음. - 예를 들어, 2025년말에 갱신된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의 통계 구축기간은 2023년까지로, 최근 교통정책의 효과를 적시에 평가하기 곤란 - 현행 조사방식은 설문·실측조사와 자료 가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일부 통계는 조사 후 공개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구조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통계 생산·공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모바일·통신·카드 등 새로운 데이터와 빅데이터 활용 및 자동화 가능성 검토, 통계공표 목표시한 설정 등을 통하여 국가교통통계의 적시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실효성 낮은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재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택시산업지원(4931-31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은 택시총량제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에 따라 자율 감차를 신청한 운송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 42억 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5억 4,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0.5%임. ○ 동 사업은 2013년부터 장기간 추진에도 택시 초과공급이 해소되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25년 산정한 제5차 택시총량에 따른 초과공급률은 19.4%로 5년 전 초과공급률(17.7%)보다 상승 - 제5차 택시총량(적용기간: 2025~2029)에 따른 초과대수 4만 7,972대 가운데 2025년 실제 감차는 656대로 연간 감차 달성률이 1.4%에 불과 - 매년 약 1,000대의 감차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2024년 82.6%에서 2025년 60.5%로 하락하여 실제 감차 실적은 편성물량에도 미달 - 특히, 7개 특·광역시 중 부산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초과공급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의 참여가 부진 ○ 지역별 택시 면허가격과 수급여건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보상단가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사업방식으로는 감차를 충분히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 택시 수급상황과 면허가격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개선방안과 초과공급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저상버스 지역별 도입목표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의무 이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부산, 대전, 충남, 전남, 경북은 5년 연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대수를 미확보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법적 의무를 훼손하고 있음. ○ 저상버스 보급률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여 법정 국가계획의 이행이 미흡함. - 2026년 8월 현재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56.3%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2026년까지 목표치 62%에 미달 - 특히,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각각 20%와 29%로 목표치(농어촌버스 42%, 마을버스 49%)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저상버스 도입 목표가 지역별로 노선·차량 수요 변화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남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역별 도입률을 반영하여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며,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도입 기준을 장기간 미충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저상버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관리 및 부처 간 보조사업 연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저상버스 도입보조 내역사업은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비용을 지자체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임(국비 보조율 서울 40%, 그 외 50%). - 2025년도 예산액 1,602억 9,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242억 2,3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7.5%임. ○ 2025년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53.3%로 2026년 목표치 62%에 상당수준 미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에 편성물량(3,702대)보다 385대가 적게 교부되는 등 목표 및 예산 대비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저조함. - 지방비 부족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구매보조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보조금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 저상버스가 전기·수소버스 등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지원사업만으로는 실제 차량 도입을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만큼 부처 간 사업 연계가 중요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차종별·지역별 저상버스 도입 수율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공유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 사업과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연계하는 등 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시스템 참여·가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시스템 내역사업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지역(대전·세종·충북)의 이용자 만족도는 82%로, 시스템의 편의성과 사업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으나 중증보행장애인의 가입률 및 타 지역의 참여가 매우 저조함. - 시범지역 중증보행장애인 약 4만 8,000명 가운데 2026년 7월 기준 가입자는 1,384명으로 약 2%에 불과 - 시범지역 외에 통합관리시스템과 추가로 연계한 지자체도 없어 사업 확산이 더딘 상황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참여 지자체에서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예약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단계적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충실한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물류산업지원(4034-309)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물류선진화 정책연구 내역사업은 물류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 문제 및 정책연구과제 미등록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국회의 시정 요구 미이행 상태임 【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 (시정) 국토교통부는 물류선진화 정책연구 내역사업 관련 사업관리 미흡으로 정책연구 과제 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정책연구과제 등록관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월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자료 : 2022회계연도 결산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집행률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인해 47.7%에 불과 - 2024년 연구용역 3건 중 2건, 2025년 연구용역 4건 중 4건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미등록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의 반복적 이월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반복적 임차료·국외업 무여비 불용 및 예산편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물류산업지원(4034-309)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한중일 복합운송 지원 내역사업은 한중일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국내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임차료로 편성된 9백만원 전액 불용, 국외업무여비 8백만원 중 3백만원만 집행(집행률: 17.6%) -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년 동안의 국내회의 개최 및 해외참석 실적이 당초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발생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제회의 참석 계획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반복적 집행부진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우수물류기업 인증 사후점검 예산의 반복 이월 및 점검 실적 미확인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물류산업지원(4034-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우수물류기업 육성 내역사업은 우수한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물류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국내 물류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 인증 이후의 정기 검사·사후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2년 연속 1억원 규모로 이월되고,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요건 유지 점검 실적이 결산자료에 미기재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요건 유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대상·실시 건수·요건 미달 확인 사례 및 취소·정지 등 조치 실적을 공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과징금 및 변상금의 과소계상 및 수납률 저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벌금 및 과료(56-561),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변상금(57-57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 중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과징금은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되며,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항 부지 등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 부과됨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과징금 및 변상금은 최근 수년간 예산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간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 - 특히 벌금 및 과료와 변상금은 2025회계연도 수납률이 0% -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5년 이상 장기 연체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장기 체납채권에 대한 정리 및 징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적기 준공을 위한 반복적 이월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제주공항 시설개선(3532-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은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을 위해 상시 관제안전 위협요소를 해소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임 - 당초 2019년에 착수하여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2년부터 매년 이월 및 불용 반복 - 2025년에는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본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비를 재차 증액 편성하였으나 추경 편성액의 68%가 다시 이월됨 - 특히 본 사업은 연례적 이월 및 집행부진, 무리한 예산 편성에 대해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 시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어 향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면밀히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나, 시정요구 미이행 【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 (주의)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의 공사비 이월 예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월 예상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예산을 면밀히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연례적 이월 발생을 방지할 것 ※ 자료 : 2022회계연도 결산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2026년 적기준공을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복적 이월을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및 연말·차년도 발주 부적정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개발조사(3532-309)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항발전지원사업은 공항 미래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는 예산 편성 근거에 없던 신규과제를 추가하여 일반연구비(260-01)로 7건, 정책연구비(260-02)로 8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일부 신규로 추진된 용역과제는 2025년 말, 2026년 초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금액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집행률: 55%) - 신규 용역의 연말·차년도 발주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서는 4억 3,800만원, 2025회계연도에서는 9억 2,0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회계연도와 사업수행기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된 편성 목적과 산출근거에 맞게 집행하고 신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연말 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신규 용역을 발주·계약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국회 제출 예산집행계획과 상이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 중복편성 부적정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3532-32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사업은 청주국제공항의 대형 항공기 취항 및 중·장거리 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주기장 확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예산 중 집행이 어려운 41억 9,500만원을 불용하는 것을 전제로 동일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2026년 예산안 편성 당시 설명과 달리, 해당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61억 5,400만원을 재이월하는 등 집행계획 변경(총 필요예산(100억원) 대비 중복 편성된 2026년도 예산 41억 9,500만원은 불용 예정) - 이는 예산안 편성 당시 국회에 제시한 전제와 실제 예산집행이 상이한 예산의 중복편성 문제를 야기하여 해당 재원이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취지를 훼손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 최소화 자체를 목적으로 한 재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타당성재조사 미요청 및 수의계약 예비계약자에게 부당한 설계변경 지시 등 사업관리 부실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지원 등을 위해 흑산도에 소형공항(80인승 항공기 운항)을 건설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9억 5,500만원으로 공사비 29억 4,500만원 전액 이·전용, 예산현액은 1,000만원 중 900만원 불용 -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흑산도 소형공항의 공항등급을 상향하면서 예산 증가로 인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됨을 인지하였으나 타당성재조사를 적기에 요청하지 않음 - 서울지방항공청은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예비계약자와 설계변경방식으로 공항등급 상향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설계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증액된 설계비 지급을 보장해주는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부실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규모와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집행 부진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새만금 신공항 건설(3538-305)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연관산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북권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 및 이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대응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 집행률이 44.6%로 저조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사업 집행 부진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대구경북신공항건설(3538-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실현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 예산 집행에 선행되어야 할 민항기본계획이 총사업비 협의로 지연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 전액(666억 5,300만원) 미집행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백령도소형 공항건설사업 집행 부진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백령도소형공항건설(3538-310)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백령도소형공항건설 사업은 도서지의 교통이동권 확보, 응급구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지원 등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 공항등급 변경에 따른 타당성 제조사 시행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 전액(30억 9,500만원) 미집행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백령도소형공항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서산공항 건설사업 집행 부진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서산공항 건설(3538-31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산 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하여 공항 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임 - 서산공항은 사업부지 변경과 유도로 연장 등으로 기본계획 단계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85.7% 증가한 899억원임 -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 전액(16억 6,200만원) 미집행 -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에도 10억 5,000만원을 재편성하는 등 예산 운용을 안일하게 지속 중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한 집행지연 및 추가 예산 조정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3631-302)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공항별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은 12·29 여객기 사고 이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7개 공항(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제주) 방위각시설 기초대를 성토 등을 통해 지하구조물화 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는 사업임 - 당초 연내 집행 완료 계획과 달리 총 실집행률은 54.7%에 그쳐 일정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총 6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사업 중 5개 공항 실집행이 부진 -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임시구조물 설치·철거로 추가 예산 조정이 초래되는 등 사업관리 미흡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 목적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시 사업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시시설 설치 및 철거와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잘은 세목조정 등을 통한 부적정한 예산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공안전교육훈련(3636-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항공안전교육훈련사업은 항공안전감독관 등 규제감독 분야 17개 직무 항공안전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등 업무제공 분야 10개 직무 항공안전공무원 및 12개 직무 기술행정공무원 등 총 39개 직무별 항공안전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유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에는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가 실소요보다 과다 편성되고 국내여비 및 임차료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20회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2024회계연도에도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를 실소요보다 과다 편성한 반면 국내여비 및 임차료 부족으로 총 19회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정 소요 예산액을 편성하고,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한 주행데이터 국외이전 심사 요건 정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율자동차 상용화(4633-31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테스트베드·데이터 등 기술적 기반 조성과 함께 시범운행지구 실증 및 성과평가 등 제도적·현장 지원을 병행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그런데 외국계 사업자의 국내 법인 설립과 합작 추진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집행은 시험시설과 실증 지원에 머물러 진입 단계의 규율 정비를 위한 집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집행 관리 또한 불용 사유와 실적 기재가 검증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 -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사업은 산학연 57개 기관의 공유를 지원하나, 상용사업자가 운행 중 수집하는 주행·영상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심사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책임·보험, 원격관제, 주행·영상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요건을 마련하되, 이를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집행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율자동차 상용화(4633-31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테스트베드·데이터 등 기술적 기반 조성과 함께 시범운행지구 실증 및 성과평가 등 제도적·현장 지원을 병행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93억 5,400만원으로, 이 중 8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그런데 2024년 결산에서 사이버보안 인증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자동차 보안지원 및 대응체계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에도, 2025년 불용액 9억 1,700만원은 2024년 1,280만원(예산 429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표준화 조속 추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율자동차 상용화(4633-31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사업은 민간의 자율주행데이터 공유 및 협력 촉진을 위해 주행데이터 수집용 차량 제작, AI학습용 데이터 가공·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해 수집하거나 개별 기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상호 공유·활용하여, 부족한 학습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하지만 기업별로 카메라·라이다·레이다 등 센서 데이터의 저장 형식이 다르고, 차량·보행자·이륜자동차·신호등·차선 등 객체를 정의하고 표기하는 방식이 다른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학습데이터의 실질적인 상호 공유·활용을 위해서 센서 데이터 저장 형식, 객체 정의·분류 기준 등을 표준화하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판매 후 소프트웨어 변경 차량의 안전기준 정비 및 사후 안전관리 절차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동차안전도 강화(4634-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자동차안전도 평가, 자동차제작결합조사,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등을 위한 사업임. ○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 충족 차량은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그런데 판매 후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주행보조(레벨2) 기능이 신설·변경되는 방식이 국내외 제작사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나, 동 사업은 예산 전액 집행에도 법적 목적인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에 이르지 못하였고, 검증 실행은 오히려 축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주행보조 기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비하되, 인공지능 기반 기능 등 기존 요건으로 포섭되지 아니하는 방식도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것. 또한 제작사의 국적을 불문하고 판매 후 소프트웨어 변경 차량에 대하여 규모·변경사항 파악,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사고 보고, 소비자 고지 절차를 마련하되, 사고 정보의 집계 기준과 활용 범위를 함께 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선 정 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확대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율자동차 상용화(4633-31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및 관리하는 지자체와 자율주행 기업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런데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경남 하동 뿐임. ○ 2025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7,970개의 노선에 35,596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반면, 농어촌 버스는 5,383개의 노선에 2,251대에 불과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일 기준, 대중교통 평균 배차 간격은 서울이 10.7분인 반면, 강원은 74.4분, 경북은 70분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시, 배차 간격과 노선 결손율 등 ‘교통 취약성 지표’ 를 적극 반영할 것(정희용위원) ○ 국토교통부는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자 선정 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허영위원)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의 후속사업 지원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4633-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제공하여 충청권 자율주행 여건 조성 및 자율주행 관련 업체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임. ○ 그동안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구간과 차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여객운송 운행거리도 목표 대비 180.6%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사업기간이 2025년 종료되고 2026년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동안 구축한 자율주행 광역교통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속·확대할 수 있는 후속 지원방안이 필요함. 특히 대전은 반석역과 대덕특구·KAIST까지 자율주행 노선이 확대된 만큼, 이를 지역의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충청권 자율주행 광역교통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후속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정부보장사업 장기 미수납 채권의 적극적 회수 및 신속한 해소	관련사업명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환입금과 정부가 보험회사 등의 가불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한 미반환가불금환입금 등을 수납하는 것임. ○ 2025년 계획액은 221억 1,0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누적)이 3,083억 3,200만원이고, 이 중 251억 4,200만원(8.2%)수납되어, 2,687억 4,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44억 4,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됨. 【 2025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계 획 액</th> <th rowspan="2">계 획 현액</th> <th rowspan="2">징수결 정액(A)</th> <th rowspan="2">수납액 (B)</th> <th rowspan="2">미수납액</th> <th rowspan="2">불납 결손액</th> <th rowspan="2">수납률 (B/A)</th> </tr> <tr> <th>당초</th> <th>수정</th> </tr> <tr> <td>기타경상 이전수입</td> <td>22,110</td> <td>22,110</td> <td>22,110</td> <td>308,332</td> <td>25,142</td> <td>268,745</td> <td>14,445</td> <td>8.2</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최근 5년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6~8.7% 수준으로 저조하고, 미수납액은 매년 2,6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보상금 및 미반환가불금 미결 구상채권이 장기간 누적됨에 기인함.									구분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징수결 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기타경상 이전수입	22,110	22,110	22,110	308,332	25,142	268,745	14,445	8.2
		구분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징수결 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기타경상 이전수입	22,110	22,110	22,110	308,332	25,142	268,745	14,445	8.2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교통시설특별회 계 도로계정 적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세입·세출(고속도로 건설(1500) 등)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은 수납액 7조 2,162억 8,600만원, 지출액 7조 2,056억 2,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6억 5,800만원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5,442억 4,900만원에 달하여 세계잉여금 △5,335억 9,100만원이 발생함. ○ 음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사업은 이월되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이월되지 못하는 ‘세입 자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축소·지연 및 국회가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도로계정의 음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과소수납과 자체수입의 저조한 수납 등 세입 부족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없이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 집행과 대규모 이월이 이루어진 데 기인함. ○ 특히 도로건설·도로관리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재조사,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대규모 이·전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세입 결손 상태를 방치한 채 적정 지출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과도한 이·전용을 유발하여 대규모 세계잉여금 적자를 발생시킨 비정상적 예산 운용 행태를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고속도로조사 사업 연례적 이·불용 과다 등 문제점 개선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고속도로조사(1531-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고속도로조사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8.3%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함. - 집행률은 2023년 76.5%, 2024년 24.6%, 2025년 58.3%임 - 2025년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검토 지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지연, ‘완도-강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과업기간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함. ○ 한국도로공사 자부담분을 포함한 2025년 실집행률은 42.8%로 2023년 이후 한국도로공사 부담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집행실적이 더욱 저조한 상황임. ○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설계비의 60%를 부담하는 것은 법령상 명문화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조사 설계 예산의 한국도로공사 자부담 분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사업비 분담기준을 명확히 할 것 ○ 국토교통부는 사업별 인허가·민자적격성 검토 등 선행절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사업 진도를 관리·공개하는 등 반복적인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예산 미반영 사업의 신규 타당성조사 추진 방지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고속도로조사(1531-301)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예산에는 신규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2개 사업에 대한 예산 6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5년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타당성 조사 1차연도 사업예산을 다른 구간의 낙찰차액 등을 활용(1억 4,500만원)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5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계약은 12월 22일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체결 시점이 늦어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였음. ○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특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신규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은 다년도 사업의 최초 단계로서 향후 기본·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연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은 보다 중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신규 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도로분야 유사 목적 국외여비의 통합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1741-461) 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국도건설지원(1631-301), 국도유지운영(1732-302), 과적단속운영(1732-303), 첨단도로교통체계(1736-304), 민자도로건설지원(1831-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도로분야 총 6개 사업의 국외여비는 1억 9,85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 1억 7,850만원 중 1억 4,840만원을 집행함 ○ 이 사업들에 편성된 국외여비의 최근 4년간(2022~2025)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가 여러 세부사업에서 각각 집행된 경우가 있었고, 세부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목적으로 국외여비가 집행되었음. - 특히 국도유지운영에서 집행된 국제통계협회(IAOS) 참석, 과적단속운영에서의 ITS(지능형 교통체계) 총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비 집행은 해당 세부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직원 역량 강화 또는 타 부서 소관 국제협력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기본경비 또는 보다 적합한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도로사업 관련 국외여비가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편성·집행되는 경우 전체 예산의 규모를 알기 어렵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현재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유사 목적의 국외여비를 통합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대규모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국도건설(1632-300~880)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토교통부는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일반국도건설 사업에 860억원을 증액 하였으나, 결산 결과 추경 증액분의 2.1배가 넘는 1,846억 1,200만원이 이월·불용됨. - 2025년도 예산액 1조 5,979억 8,400만원 가운데 다른 사업으로 255억 9,600만원을 전용·감액하고 남은 1조 5,723억 8,8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조 3,990억 100만원으로, 나머지 1,733억 8,700만원은 이월 또는 불용됨. ○ 추경 대상인 신안압해-화원 및 태안고남-창기 사업은 대부분 집행(99.6%)되었으나, 일반국도건설 전체적으로는 기존예산의 이·전용 등 조정과 전년도 이월예산의 재이월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가용재원이 있었음. -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지급계획협의 시작일인 3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309건의 내역변경·목간전용·사업간전용 등이 이루어졌고, 이 중 88건은 12월 23일에 이루어졌음. - 동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624억 5,600만원 중 1,512억 3,100만원만 집행되었고, 전체 불용액 27억 4,7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4억 7,80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이 다시 다음 연도로 재이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추경액보다 많은 예산이 이월·불용된 점을 고려하면, 제2회 추경 당시 기존 예산의 활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과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일반국도건설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 간 조정이 가능한 기존예산과 이월예산, 전체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추경 편성 및 대규모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국도건설(1632-300~880)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2025년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세부사업간 4,487억 9,900만원 규모의 이·전용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2025년 본예산 1조 5,119억 8,400만원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임. ○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전용내역 중 팔탄-봉담 일반국도건설사업, 충청내륙1 일반국도건설사업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전용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 ‘팔탄-봉담 일반국도건설사업’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잔여지 매수 등을 위한 추가 용지보상비 확보를 위해 2025년 총사업비 협의 이후 8억 9,100만원을 전용하였음. - ‘충청내륙1 일반국도건설사업’은 당초 2024년에 잔여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였음에도 이월 가능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2025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은 채 216억 3,300만원을 전용 및 내역변경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월된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 예산을 추가 집행하는 것은 집행 단계에서 신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전용 등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이·전용을 통해 증액하여 추가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첨단도로교통체 계 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첨단도로교통체계(1736-30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 중 국도 ITS 구축·운영은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 수원시와 같이 도심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신규 도로 개설이 어렵고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은 기존 도로에 신호 최적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ITS를 구축할 경우 교통정체 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사업은 국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내 국도 비중이 낮고 도시계획도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ITS 구축 필요성이 있음에도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속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ITS 구축·운영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위험도로 개선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위험도로 개선(1740-461)	시정,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도로폭 협소, 급커브 등 도로 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대해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860억 7,000만원 중 96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824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 3,600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의 집행률은 2022년 88.3%에서 2025년 52.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월액은 같은 기간 184억 5,500만원에서 824억 9,1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위임국도의 2025년 집행률은 33.3%로 일반국도 73.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현재 위임국도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전반의 사업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취소사업의 65%가 다른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선정·관리가 미흡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도로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사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대규모 사업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취소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안전 예방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즉각 정비할 것(시정) ○ 국토교통부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집행상황 및 집행부진 원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임국도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존 도로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수납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도로운영지원(183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도로운영지원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현액 1,920억 7,200만원 중 1,905억 3,200만원을 집행(99.2%)하고 15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 통행료·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수납률은 77.9%로 재정도(82.2%)보다 낮고,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14.7%로 재정도(27.0%)보다 현저히 저조함.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미납통행료 담당 인력은 5명에 불과한 반면,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는 41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강제징수(압류) 실적도 관리지원센터는 3,000건으로 한국도로공사(49만 8,000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도로 수납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압류를 실시하는 등 미납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민자도로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도로운영지원(1831-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도로 운영지원 사업은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통행료 미인상분, 명절 통행료 면제 등에 따른 사업자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사업임. ○ 민자도로의 협약통행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는 반면 실제 징수통행료는 정책적으로 동결·인하되면서 두 요금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 실제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액은 2021년 295억 7,300만원에서 2025년 1,326억 5,000만원으로 4.5배 증가하였고, 2025년 전체 손실보전액의 84.1%를 차지함. ○ 통행료 동결·인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일반재정으로 보전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통행료 인하의 정책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 이용자 부담과 국가 재정부담 간의 균형, 취약계층 및 지역 교통여건, 재정고속도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자고속도로 징수통행료의 적정 수준 및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협약기간 전체의 손실보전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1차연도 실집행률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1940-300)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국고 70%, 지방비 30%의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편성된 신규사업 20개 중 19개 사업이 1차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였으며, 1차연도 평균 실집행률은 5.7%에 불과함. ○ 연내에 5년간의 국도·국지도 사업을 정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신규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1차연도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계획 확정과 동시에 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노후출자역사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2731-30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노후출자역사개량’은 준공 30년 이상 출자역사 168개역 중 52개역을 대상으로 2025~30년간 1조 622억원(국고 40%)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임. ○ 2025년 예산의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이월된 예산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6억 5,400만원 중 209억 4,700만원을 실집행(73.1%)하였고, 77억 7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조달청과의 계약의외 과정상 서류보완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노후출자역사개량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철도공사는 역사개량사업 추진 시 역사 내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출입구 신설 등 역사 주변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역사 주변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노후출자역사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역시설개량 사업의 발주·집행관리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2731-302)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노후철도역사개량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52억 3,000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162억 2,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9.4%에 그침. ○ 특히 사업기간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이 중 92억 6,000만원(46.3%)만 집행되었고, 추경 대상인 수서·북정 등 11개 역사의 실집행률은 8.9%에 불과함. -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노후역사 개량공사를 3개 공구로 통합 발주하였으나,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공사의 현장관리 및 산업안전관리 부담이 증가하면서 입찰이 유찰되었고, 이후 5개 공구로 분리하여 재발주함에 따라 계약이 2026년에 체결됨. ○ 공사의 특성과 입찰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합발주로 계약이 지연되어 연내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노후철도역사 개량공사의 특성과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실집행 부진 및 미집행 출연금 관리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철도사후관리 및 지원(2731-345)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철도사후관리 및 지원 사업은 철도건설 이후 미보상·소유권 미이전 토지 관리, 사후환경영향평가, 철도건설사업 사전·사후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2025년 본예산 163억 1,600만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공단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48억 6,5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40억 1,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6.4%에 그침. ○ 인덕원~동탄 등 9개 사업은 건설중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예산은 건설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건설사업 예산으로 집행됨에 따라 동 사업에 편성된 9개 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예산은 실집행단계에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집행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즉시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이월함. ○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지연과 연말 계약으로 사전·사후평가 내역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쳤고,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에 이미 반영된 사후환경영향평가비가 별도사업에 중복 편성·교부되지 않도록 중복 편성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예산 편성 전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며, 중복 편성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출연금은 조속히 국고에 반납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사전·사후평가 용역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사후평가 사업의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며, 용역이 연말에 집중되거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철도기본계획수립(2733-30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도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100억 500만원 중 46억 7,000만원(46.7%)만 집행되고 4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8,5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 동 사업은 2023년 46억원, 2024년 51억원, 2025년 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에 따라 후속 절차인 사업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는 데 주로 기인함. ○ 현행 지침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24개월 이내이나, 최근 5년간 21건 중 14건 (66.7%)이 이를 초과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과 SOC분과위원회·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행정절차 지연도 조사기간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의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정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할 것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SOC분과위원회·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적기에 진행하고, 필요한 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시범사업 추진시 사전검토 강화 및 이미 개발된 연구성과 활용 실적 등 지속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2733-32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은 산악지역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 산악철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노선을 구축·운영하는 R&D 사업임. ○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3억 7,9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남원 시범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25년 예산 27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시범사업 공모·선정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규제와 사업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시범노선이 주요 보호지역과 불과 18m 떨어져 있고 향후 상용노선에는 보호지역이 포함될 예정이었음에도 노선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 ○ 그 결과 시범노선 구축이 무산되어 약 224억원을 투입하고도 개발기술의 실제 운행 안전성과 성능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 인허가 및 부지여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의 중단 경위와 사전 인허가 리스크 검토 내역을 점검하고,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성과 귀속·활용계획 및 참여기관 정산·환수 조치 결과를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는 이미 개발된 차량·인프라 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할 대체 실증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성과의 후속 활용 및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공모 시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선행절차 미완료 사업의 예산편성 관행 개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철도건설(263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국가 간선 철도망 확충을 위해 신설·개량 노선의 설계·용지보상·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운영됨. ○ 철도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고시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 순으로 추진되며, 「국가재정법」 제39조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25회계연도 일반철도건설 사업 21개 세부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0%로 862억원이 전액 불용됨.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기본계획 고시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기본계획 고시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철도사업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남부내륙철도 예산 전액 불용 등 국토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부실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남부내륙철도(2631-366)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기 위해 김천~거제 간 172.3km의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임. ○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0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남은 예산 688억원도 전액 불용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협의 및 실시설계 보완, 입찰·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계약이 2026년 1월에 체결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총사업비 협의 및 국가계약 절차 등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로서 일정 부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감액한 이후 남은 예산까지 전액 불용한 것은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의 설계·계약·착공 등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실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한 이후에도 대규모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및 집행관리에 주의할 것 (주의) ○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설계·입찰·계약 등 사업 추진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철도건설사업의 예산 편성 시 선행절차 소요기간과 사업 추진상황,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다 편성 및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민자철도 관련 과거투입액 및 장기 재정부담액을 종합적으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 운영지원(2732-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철도 운영지원 사업은 민자철도의 운영손실 보전, BTL 임대료·운영비, GTX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자철도에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 4,105억원, 철도 BTL 임대료·운영비 3,823억원, GTX 운영지원 897억원 등 연간 9천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민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천공항철도 등 일부 사업의 정부 보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자철도별 과거 재정투입액뿐만 아니라 향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장기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별 정부의 과거 투입액뿐 아니라 향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장기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 운영지원(2732-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철도 운영지원 사업 중 ‘철도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는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철도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에서 경남 김해 진례를 연결하는 32.7km의 복선전철사업임. ○ 부전마산선은 2025년 3월 개통을 전제로 임대료 및 운영비 98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낙동1터널 잔여 피난연결통로 시공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지속되면서 개통이 지연되어 전액 실행되지 못함. ○ 부전마산선은 2020년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시공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업이 크게 지연되었으며, 복구공사는 2026년 1월 완료되었으나 잔여 피난연결통로 2개소의 시공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조사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전마산선의 지속적인 개통 지연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 지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공정성·객관성·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전마산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과소 편성 우려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 운영지원(2732-309)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GTX-A 삼성역 구간은 당초 재정구간 개통에 맞춰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8년 완전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자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이익 감소분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추정 손실보전금의 일부만 예산에 반영·지급하고 있어, 향후 손실보전 규모가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보전금과 지연이자를 일시에 부담할 우려가 있음. - 2025년 추정 순운영이익 감소분은 1,637억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약 43.8%인 717억 6,100만원에 그쳤고, 추정 감소분 대비 미지급액은 약 919억원에 달함. -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 순운영이익 감소분으로 164억 4,000만원만 반영하였고, 2026년 예산에도 추정 손실보전금의 64.0% 수준인 750억 5,400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민자구간의 실제 이용량도 2026년 4월 기준 예측수요의 138.2%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확정되는 순운영이익 감소분이 현재 지급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지급 손실보전금이 누적될 경우 향후 수천억원의 손실보전금과 지연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삼성역 구간의 시공 오류로 추가적인 개통 지연 가능성까지 발생하고 있어 손실보전 규모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와 향후 재정부담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규모의 손실보전금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손실보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어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민자철도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우려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 운영지원(2732-309)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신분당선 등 연계 철도노선의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2025년에만 442억 9,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지연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연계 노선 개통 지연에 따른 소송 패소 및 이자 비용 발생이라는 재정적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건설사업의 공정관리 및 공기 단축 대책을 즉각 정비·이행하고, 기 편성된 타 사업 예산을 배상금으로 임의 전용하는 변칙적 예산 운용방식을 엄중히 시정할 것 ○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수요예측 시 연계노선 개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도건설사업의 지연으로 손실보상과 법적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GTX-A 노선 중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시공오류 책임규명 및 구상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민자철도 운영지원(2732-309)	시정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 중 ‘GTX 운영지원’ 은 GTX-A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에 따 른 민자사업자(SG레일)의 순운영이익 감소분과 특수계층 할인 운임손실 등을 보전하는 사업 임. ○ 삼성역 구간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추진 중이며, 3공구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본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되는 시공오류가 발 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 중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시공오류의 책임소재를 규명하 고, 서울시 또는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LTE-R 지방비 미매칭 방지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3031-33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지원’은 도시철도에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 가능한 LTE-R 구축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5년 5개 광역시에 총 37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율은 50%임. ○ 2025년 예산현액 378억 7,000만원 중 355억 8,500만원을 실행하여 실행행률은 94.0%이나, 광주광역시 2025년 말까지 대응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예산현액 22억원이 대부분 집행되지 못함.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방비 확보 전에 국비를 우선 교부한 경우 당해연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감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적기 개통 및 대전 광역철도망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2833-32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역~대전~신탄진역 35.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궤도·건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예산 384억 9,100만원은 전액 집행됨. ○ 2023년 말 노반공사 착수 이후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향후 공정에 필요한 국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2027년 개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또한 대전도시철도 1·2호선 등과 연계할 경우 광역교통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별 철도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가 2027년 개통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대전도시철도 1·2호선 등 관련 철도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 정산방식 개선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 은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증차운행 지원사업임. ○ 현행 정산방식에서는 12월 운행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정산할 수 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매년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회성 이월이 아니라 현행 정산방식을 유지할 경우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정산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2층 전기버스 계획물량 생산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은 광역버스 1대당 운송량을 확대하여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정류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 그런데 이 사업의 2025년 예산 현액 94억 8,0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62억 4,000만원에 그쳤으며, 32억 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 - 당초 연간 50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생산은 34대에 그쳤음. ○ 이는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라 차량 제작과 출고 일정이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계획물량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방비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차량 제작·출고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2층 전기버스 물량이 적기에 생산·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K-패스 홍보 강화 및 가입절차 간소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단 서울시 40%)를 통해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청년 등의 교통비 절감 측면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50대 이상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16.8%)에 비해 K-패스 가입 비중(14.3%)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역시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상황임. ○ 그럼에도 2025년 K-패스 홍보비 집행액은 637만원에 불과해 제도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K-패스는 카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회원을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구조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적정 지방비 확보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	주의,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통해 환급해 주는 사업임. - 이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서울시의 경우 4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임. ○ 그런데 이 사업의 환급 혜택 등 제도 개편사항을 고려하면 사업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매칭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환급액이 미지급·미정산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카드 사업자가 해당 지방비 부족분까지 이용자에게 선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사업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음(문정복위원, 유상범위원).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방비 부담분까지 환급금을 선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금 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미정산된 지방비 부담분을 조속히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주의)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등 지방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지방비 편성·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방비 확보가 확인된 범위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반복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집행부진 개선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도시철도 건설지원 (3031-315 · 316 · 320 · 322 · 326 · 333 · 335 · 353 · 355 · 357, 3032-310)	주의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도시철도 건설지원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소요자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사업 등 11개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음. ○ 일부 사업에서 예산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서울 9호선 3단계(5,500억원)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고, 2025년 대구 엑스코선(139억원)의 실집행률은 44.9%, 부산 하단-녹산선(100억원)은 3.72%에 그쳤으며, 울산 트램 1호선(60억원)은 예산이 전액 이월됨. - 특히 이들 사업은 2024년에도 집행부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사업별 지연요인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사업별 설계·발주·유찰·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지연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 공정 및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서대전IC- 두계3광역도로의 개통 효과 극대화 및 대전권 광역도로망 확충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서대전IC-두계3광역도로(1938-368)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도로굴곡이 심하여 통행량 증가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임. ○ 서대전IC-두계3광역도로 준공으로 대전 남부권과 계룡 방면의 도로 여건이 개선됐지만, 개별도로 확충만으로는 대전과 인접 도시 간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해당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 구간과 연계해 추진된 만큼,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광역도로와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서대전IC-두계3광역도로 준공을 계기로 대전 남부권과 계룡·논산 등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대전권의 교통수요와 기존 도로 간 연계성을 적극 반영하며, 필요한 광역도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공주-세종 BRT 사업과 세종-천안 BRT 1단계의 조속한 추진 및 후속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광역BRT구축(4541-383)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주-세종 BRT’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남 공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 구축 사업비 일부(국비 50%)를 충남 공주시와 세종시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세종-천안 BRT 1단계’ 사업은 세종시와 조치원 간 접근성 향상 및 연계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BRT 구축 사업비 일부(국비 50%)를 세종시에 지원하는 사업임. ○ 공주-세종 BRT 사업은 세종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행복도시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인 만큼, 계획된 2026년 준공이 지연될 경우 세종과 공주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세종-천안 BRT 1단계 사업은 대평차고지에서 홍익대 세종캠퍼스까지의 구간으로, 광역교통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천안 방향으로의 후속 구간 구축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주-세종 BRT 사업과 세종-천안 1단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인건비 자체 이용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교통본부 인건비(7101-101)	주의	항공교통본부
		지적사항	○ 항공교통본부는 1억 6,200만원을 항공교통본부 인건비에서 청관사관리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자체 이용 - 항공교통본부가 행한 일반연구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은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2025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 따른 자체 이용 대상이 아님		
		시정요구사항	○ 항공교통본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향후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의 이·전용을 통한 총액인건비 증액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7111-201)	주의	항공교통본부
		지적사항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는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상용임금,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등)임 - 항공교통본부는 2025년 말 세출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3차례 이·전용하여 총액인건비 규모 증액 - 이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항공교통본부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이·전용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를 증액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한국교통안전공 단 수탁사무 편람 구비의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공단출연(4638-301)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적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사무 수탁 시 사무편람 구비의무에도 불구하고 94개의 국가 수탁사무 중 49개 사무를 사무편람 없이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 수탁사무의 일관성·책임성과 위탁기관의 감독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구비된 수탁사무의 편람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수탁기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세종공동캠퍼스의 교육·연구 인프라 및 공동교육 기반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1031-515)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지적사항	○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공동캠퍼스의 공용자산 구입 및 교사시설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임. ○ 현재 5개 대학, 6개 전공에 학생 802명이 입주하고 있으나, 임대형 입주대학은 공익법인이 시설을 운영·관리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2025년도 시설비·자산취득비 집행규모도 2억 3,500만원에 불과함. ○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의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현재 입주학생 80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2개 대학의 추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기숙사 확충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입주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 등 공동교육 기반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와 기숙사 등 학생 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간 공동교육·학점교류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대통령세종집 무실 건립사업의 반복 이월 방지 및 공정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2031-307)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56억 5,900만원 중 3억 4,7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6.1%에 그쳤고, 52억 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에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단계에 머물면서 기본조사설계비 43억원 중 42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이 중 9억 1,200만원은 재이월된 예산으로 연례적인 이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준공목표가 2030년 5월에서 2029년 8월로 단축되었으나, 2026년 4월 예정되었던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가 연기되는 등 후속 절차의 순연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2029년 8월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단계별 공정 및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3	건립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의 편성·집행 방지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2031-307)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지적사항	○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예산으로 국가상징구역 전체 약 210만㎡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직접적인 건축설계는 별도로 추진될 예정임. ○ 마스터플랜 대상에는 별도 사업인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업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전용을 통한 당초 계획에 없던 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2033-315)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지적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5년 건설보상비 350억원 중 15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 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추진하였 음. ○ 국회에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와 추진단이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설 계공모 준비·운영 등 유사한 사업관리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계기 관 간 업무분담 및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 과 사업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것		
5	사업단계별 예산편성의 정밀성 확보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2033-315)	제도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지적사항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2019년 최초 예산 편성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 며, 2025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의 99.7%인 약 1,167억원이 이월되는 등 대규모 이월 이 지속되고 있음. ○ 설계·보상 등 실제 사업단계에 앞서 예산이 선행 편성되는 측면이 있어, 사업단계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단계별 공정과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이월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라. 새만금개발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토지대여료 수납률 제고 및 미수납채권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토지대여료(51-511)	시정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토지대여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에 부과·징수하는 국유재산 사용료임. ○ 2025년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 39억 5,800만원 중 13억 9,100만원만 수납되어 수납률이 35.1%에 그쳤으며, 미수납액 25억 6,800만원 중 파산기업 1개사의 체납액이 16억 7,000만원으로 약 65%를 차지함.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고액 체납기업에 대한 보증보험금 청구와 납부 독려 등 채권회수 조치를 강화하고, 자체 징수가 곤란한 체납채권은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사무를 위임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버추얼 새만금’ 콘텐츠 품질 및 운영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5557-337)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 콘텐츠 ‘버추얼 새만금’은 새만금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이 낮은 객체가 배치되고 일부 콘텐츠에서 상호작용 오류가 발생하는 한편,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교육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버추얼 새만금’ 콘텐츠의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콘텐츠 개선사업의 개선대상 및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준공검사 시 콘텐츠 완성도에 대한 검수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사업출연금 편성계획과 자체수입 확보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5557-392)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은 박물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경상비와 전시·교육·유물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출연사업임. ○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시·교육 등 고유사업 경비가 사업출연금으로 별도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사업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동일 성격의 경비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만 집행하였음. ○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의 편성·집행 구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별도의 자체수입 없이 정부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의 편성·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4	사업 실행 가능성 사전검증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5557-405)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부지는 군산시와 기존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항소심 선고 전인 2025년 11월 19일 1차 설계비를 교부하고, 12월 1일 2차 교부를 실시하여 설계비 4억 9,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음. ○ 대법원 판결로 부지 권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설계 착수가 곤란하였다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 전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소송·인허가 등 법적·행정적 사전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등,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의 사전검토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5557-418)	주의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폐수 배출을 위하여 공동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53억 9,900만원 중 93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0%에 그쳤고, 115억 1,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44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고염도 폐수 처리방식, 주민·어민단체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었고, 용수관로 추가 설치 수요 변경 등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등 사업준비 및 예산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주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사업공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대규모 이월·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6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전검토 및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5557-432)	제도개선	새만금개발청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예산 65억 4,200만원을 한국전력공사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3,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6.4%에 그쳤음. ○ 예산 확정 이후 사업내용이 개폐소 설치에서 변전소 설치 등으로 변경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추가되면서 당초 2025년 11월 예정이던 착공이 2026년으로 순연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새만금개발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전력수요·공급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3. 부대의견

1. 국토교통부는 반복적인 이용 및 불용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거·안전·교통 등 민생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 집행 → 실제 국민 수혜’ 까지 연결하여 성과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2. 국토교통부는 성과지표 수립 시 집값 안정 등 현장감 있는 지표가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국토교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미 소관이 넘어간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향후 부처 간 업무 이관 시 관련 자산의 인수인계 및 제거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회계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4. 국토교통부는 형식적인 전산상 분류인 ‘기타사유’ 채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게 재분류하고, 수납 누락 및 오류데이터를 신속하게 정비한다.
5.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과 적극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다.
6. 국토교통부는 도로계정의 세입을 실제 수납 가능액에 맞게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수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 반여·반송지역 등 정책이주지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시설·노후주택 정비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8. 국토교통부는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시, 천안시가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9.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2024년 및 2025년 지출액을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선급금이 아닌 일반연구용역비로 처리하였는데, 장차 자산으로 귀속될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재정상태가 왜곡된 것이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선급금으로 정정하고, 대규모 정보화 구축사업의 취득 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재점검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한다.
10. 국토교통부는 정책금융, 청약, 공공주택 전반에서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혼·신생아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양육 인센티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동(空洞)의 복구가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비용분담 기준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2. 국토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단축 및 중단 시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 현장에 제주도 기후 보험과 같은 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13.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연식과 조종사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에 대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업역 간 상생이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지원을 한다.
14. 국토교통부는 신혼가구 및 청년층이 서울·수도권 등 실제 거주지에서 내 집 마련 및 전세 계약이 가능하도록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최대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물가 현실에 맞게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기금 직접융자 집행률을 조속히 정상화한다.
15.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을 앞둔 입주예정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16.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후속사업 추진 시 공사지역의 부분 통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을 지속한다.

17. 국토교통부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준공 연장계획에 따른 변경 공정 및 연차별 재정소요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필요한 국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시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차질 없이 확보·편성하여 추가적인 공정 지연 및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18. 국토교통부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정부정책에 맞춰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한다.
19.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사업 중 반복적으로 이·전용·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을 선별해 현실적인 연차별 공정과 예산을 재수립한다.
20.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의 수익형 민자사업 관련, 민간이 부담한 부분을 국가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자산·순자산이 왜곡된 회계처리를 사용수익권으로 정정하고, 민자사업(BTO) 취득자산의 회계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1. 국토교통부는 국도건설 프로그램의 소송충당부채를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처리하지 않아 손익이 왜곡되었으므로 관련 계정을 정정하고, 향후 소송 결과 확정 시 충당부채의 사용·환입 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시정한다.
22.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의 고속도로 토지보상금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차입금 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이 과대 인식되었으므로 이를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정정하고, 차입 관련 원리금 상환의 원가 산입 여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23.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국도를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의 재무제표에 4년 넘게 반영하지 않은 자산 관리 소홀을 시정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이관받는 경우 지체 없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4. 국토교통부는 국도건설 프로그램의 국도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된 토지는 자산(토지)으로, 진행 중인 보상은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용 등으로 처리하여 자산이 과소 인식되었으므로 관련 계정을 정정하고, 토지보상의 완료·진행 단계별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25.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중단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 및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26. 국토교통부는 국도14호선 기장-일광 신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7.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후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적기 이행하고,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28.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건설 프로그램의 사용수익권 인식 및 상각 회계처리를 즉시 바로잡고, 민자사업(BTO) 취득자산 회계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29. 국토교통부는 GTX-B의 민자·재정 전 구간의 실제 공정률과 지연구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구간별 일정 관리를 강화한다.
30. 국토교통부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 신창역 일대의 환승주차장 확장과 서틀 연계망 구축 등 주민편의 개선 사업을 적극 검토한다.
31. 국토교통부는 대경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차량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예비차량 산정 시 적정 수준의 절대 편성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KDI 예비차량 산정기준 개선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32. 국토교통부는 중단된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에 대하여 남원 외의 지리산 주변지역이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33. 국토교통부는 민간역사 장기점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세권 가치 및 매출 상승이 점용료와 추가 공공기여 및 국민적 편익 증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4. 국토교통부는 중앙선 기장역 KTX-이음 정차 확대를 검토한다.
35. 국토교통부는 중앙선 센텀역 KTX-이음 정차 확대를 검토한다.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실험·연구 인프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입주에 대비한 기숙사 확충 및 입주대학 간 공동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준공목표 및 총사업비를 고려한 집행계획을 마련한다.
38. 새만금개발청은 체납 입주기업에 대한 징수 및 채권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토지대여료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다.
39. 새만금개발청은 ‘버추얼 새만금’의 지역 관광자원 연계성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콘텐츠 개선사업의 개선대상·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준공검사 시 콘텐츠 완성도 검수를 강화한다.
40. 새만금개발청은 용·폐수 공동관로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수요 산정 및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대규모 이월·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41. 새만금개발청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편성 시 전력수요와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행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